

會計監查報告基準 및 報告準則에 관한 研究

李 庸 俊

目次	
第1章 序 言	第3章 監查報告書의 事例分析
第2章 監查報告 關係規程의 國別 比較分析	第1節 우리나라 監查報告書의 事例와 問題點
第1節 美國의 監查報告規程	第2節 監查報告實務上의 一般的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第2節 日本의 監查報告規程	
第3節 우리나라 監查報告規程의 分析과 改善方向	第4章 結 言

第1章 序 言

本論議의 基本的인 目的은, 監查報告規程의 比較分析 및 監查報告書의 事例分析을 통하여 現行 監查報告制度를 整備하고 改善方向을 摸索하는데 있다. 여기서 監查報告라 함은 獨立的 職業監查人이 監查報告書를 媒體로 하여, 企業經營者에 의하여 作成·公表되는 財務諸表에 관하여 意見을 表明하는 節次를 意味한다. 따라서 企業雇傭人에 의한 内部監查報告는 물론 意見表明에 필요한 證據資料를入手하는 節次인 監查實施⁽¹⁾는 별다른 關聯이 없는 한 本稿의 論議 對象에서 除外될 것이다.

從來, 監查報告는 監查實施의 從屬的 結果로서 생각되어 이에 관한 研究를 相對的으로 소홀히 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會計監查報告의 本質을 理解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皮相的인 것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會計監查의 效益을 충분히 活用하기에는 不完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監查報告의 具體的 表現인 監查報告書는 公表財務諸表와 함께 當該企業의 利害關係者集團에게 會計情報 to 傳達하는데 있어서 致命的인 機能을 수행한다. 물론 監查報告는 既往에 수행된 監查實施의 內容에 의하여 制約되고, 또한 監查實施에 비하여 形式的인 側面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同一 또는 類似한 監查實施의 內容에서 出發하였다 할지라도, 監查報告의 關係規定이나 監查人의 判斷 등에 따라 多樣한

筆者: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1) “監查實施”라는 用語는 證據入手를 위한 現場業務와 더불어 意見表明의 監查報告를 포함하는 概念으로 使用될 수도 있을 것이다(예컨대, 美國의 경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慣習에 따라 現場業務만을 의미하는 狹意의 概念으로 使用하기로 한다.

監査報告를 結果할 수 있다는 可能性이 看過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實際로 後述하는 바와 같이 監査人(公認會計士)의 法制的 責任強化에 부수하여 나타난 限定期報告書의 急增現象은 특히 印象的인 것이다, 또한 監査報告書에 記載되는 具體的 事項의 表現方式이나 包含與否에서부터 意見의 基本的 區分에 이르기까지 監査人에 따라 폭넓은 分散을 보이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 만하다.

監査報告는 다른 報告와 마찬가지로 “情報傳達의 問題”(problem of communication)를 주요한 내용으로 包含한다. 사실 企業의 利害關係者集團은 公表된 財務諸表와 함께 “公表된 監査報告書”로부터 그들의 意思決定에 필요한 會計情報 to 吸收한다. 따라서 會計監査의 情報提供機能은 監査報告書에 凝縮됨으로써 비로소 受惠者들에게入手可能하게 됨을 考慮한다면, 이러한 情報傳達 自體만으로서도 각종의 研究課題를 포함하고 있음에 충분히 同意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우기 監査報告는 단순히 既往에 수행된 監査實施의 結果를 傳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相互依存의 關聯을 가지며 나아가 오히려 基本의으로는 監査報告가 監査實施의 原因이며, 따라서 그 内容을 制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現代監査는 典型的으로 試査의 形態를 취하므로 監査實施에는 상당한 伸縮性이 賦與되며, 따라서 監査報告書에 特定한 事項에 관한 意見을 特定한 方式으로 陳述하여야 한다는 法制的 要求나 監査人の 判斷 등에 의하여 監査實施의 範圍·內容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은 명백한 事實이다. 이와 같이 監査報告에 있어서의 情報傳達의 問題나 監査實施와의 有機的 關聯은 이에 관한 研究가 불충분하다는 사실과 함께 監査報告問題에 새로운 注意를喚起시키는 데充分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會計監査報告問題가 本格적으로 대두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에 속한다. 왜냐하면 比較的 最近에 이르기까지는 會計監査의 對象業體가 많지 않았고 그 利用者도 小數의 專門人에 限定되었으므로, 先進外國의 監査理論이나 監査制度의 踏襲으로 充分하였으며, 설혹 특수한 問題點이 있다 하더라도 非公式的 說明 등으로 補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急速한 經濟成長·外資導入 및 企業公開促進政策의 결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會計監査의 對象業體 및 監査報告의 利用者들이 크게 擴張되었다. 상당한 比重의 監査報告書들이 非專門의 不特定多數人으로 구성되는 利害關係者集團에 公表되었으며, 이에 따라 監査報告書의 質的 向上이 時急한 課題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要請에 부응하여, 최근에 이르러 會計監査 내지 會計監査報告의 質的 向上来 위한 制度의 整備가 急速히 進行되었다. 會計監査 報告基準 및 同 報告準則이 거듭 改定되었고,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었으며, 監査報告에 대한 監査人の 責任이

強化되었다. 또한 公認會計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訓練計劃이 입안·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意欲的인 努力에도 不拘하고 現行의 監查報告問題가 完全히 解消된 것, 또는 解消될 것이라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根本的인 問題의 源泉은 이러한 制度的 整備가 우리의 現實에 適合한 監查理論이나 監查慣習의 成熟에 基礎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適合한 監查慣習의 缺如下에 우리나라의 會計監查報告基準이나 報告準則이 先進外國의 關係規定의 조심스러운 模倣에서 出發하였다는 것은 不可避하기도 하며, 또한 가능한 試行錯誤를 考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급속한 移植의 결과, 우리나라의 監查慣習의 未發達 또는 經濟構造 및 監查報告利用者들의 特殊性에 관련하여 慮起될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문제를 看過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나라의 會計監查報告基準 및 報告準則을 先進外國, 특히 우리가 많은 影響을 받아온 美國·日本의 監查報告關係規定에 비추어, 그 形成에 이르기까지의 歷史的 背景, 構成形式, 內容 등을 比較·分析하고 그 問題點을 指摘하는 것이 다음 第 2 章의 主要課題이다.

물론 會計監查 報告基準이나 報告準則에 관한 論議가 監查報告에 관한 重要問題를 綱羅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설혹 部分的으로는 強制性에 準한 效力を 갖는다고 할지라도, 概略的인 方向을 提示하는데 그치며, 특히 監查慣習의 發達이 不完全한 우리나라의 境遇에 있어서 對象業體의 特殊性은 물론 監查人の 資質이나 主觀的 判斷 등에 따라 多樣한 監查報告가 결과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比較的 類似한 「그룹」에 屬하는 會計監查對象業體의 具體的인 事例에서, 監查人の 資質이나 主觀的 判斷이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를 檢討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事例分析은 監查報告規程의 實踐的效果는 물론 監查報告規程 自體의 檢討에서 看破되지 않았던 問題點을 檢討하는데 아주 有效한 接近方法이 될 수 있음이 判明될 것이다. 이에 따라 監查報告規程과의 有機的인 關聯下에 實제로 作成된 監查報告書, 특히 점차 중요한 比重을 占해 가고 있는 上場法人的 財務諸表에 대한 監查報告書의 事例分析을 통하여 그 問題點을 指摘하고 改善方向을 摸索하는 것이 第 3 章의 主要課題이다.

이상의 監查報告規程의 國別 比較分析 및 監查報告書의 事例分析은 本 論議의 두개의 支柱을 構成하며, 이어 마지막 章에서는 이들 論議의 結果를 綜合하여 간단한 結論을 提示하고자 한다.

第 2 章 監查報告 關係規程의 國別 比較分析

本章의 論議는 우리나라의 會計監查基準中 報告基準 및 報告準則의 分析을 中요한 內容으로서 포함한다. 會計監查 全般에 걸쳐 監查人이 尊重하고 遵守하여야 할 普遍的 規範⁽²⁾이 特定한 抽象的 水準에서 存在하여야 한다는 것이 認定되고 있지만, 특히 非專門의 特定多數人에게 監查情報의 傳達을 主要 目的으로 삼는 監查報告에 있어서는 普遍的 規範에 的 要求가 보다 具體的으로 되는 傾向이 있다. 監查報告基準과 報告準則은 이러한 普遍的 規範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그 중 監查報告基準⁽³⁾이라 함은 원래 監查報告實務에서 健全한 經驗의 蒸溜로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社會的 公準을 成文化한 것으로, 監查報告行爲의 質的 尺度이자 目的을 提示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報告準則⁽⁴⁾은 監查人이 現場業務에서入手한 合理的 證據資料에 입각하여 報告基準을 選擇的・變動的으로 適用하는 方法에 관한 規程을 주요 內容으로 포함한다. 成文化된 會計監查基準・監查報告準則 등의 規程을 가진 先進國은 美國・日本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成文化된 規程 없이 散發의 規程과 廣範한 監查慣習에 依存하고 있다.

第 1 節 美國의 監查報告 關係規定

1. 歷史的 背景

美國은 世界 最初로 近代的인 會計監查基準을 制定하였을 뿐만 아니라, 會計監查制度의 發達 全般에 걸쳐 主導의役割을 擔當하여 왔다.

1933年「有價證券法」이 制定된 이듬해인 1934년에 「證券去來所法」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新設되었는데, 이는 특히 投資者 保護를 為主로 하는 現代 監查制度의 成立에 中요한 影響力を 行사하였다. 바로 그 해에 「美國公認會計士會」와 「뉴욕證券去來委員會」가 協議하여 「會社會計의 監查」를 作成・公表하였고, 1936年에는 「獨立된 公認會計士에 의한 財務諸表의 檢查」를 發表하였다.

-
- (2) 會計監查에 있어 시의 '規範'은 會計上의 規範과 마찬가지로 원래 理論的・先驅的으로 提示한 것이 아니라, "健全한 實務紀錄"(good practice)을 歸納的으로 要約・整理한 "經驗의 蒸溜"(distillation of experience)이다. 다만, 後述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監查報告規程은, 監查慣習의 未熟下에 監查業務를 先導하는役割을 遂行하게 된다.
 - (3) 監查實施와 監查報告의 兩者를支配하는 一般基準의 內容을 포함한다.
 - (4) 원래, 實務經驗에서 歸納的으로 形成되었음은 報告基準의 경우와 같다. 우리나라의 監查報告準則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監查報告基準의 具體的 說明으로 볼 수 있는 總則과, 이에 입각하여 選擇的・變動的으로 適用되는 各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던 중 1938年 12月에는 「뉴욕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던 「맥케슨·로빈스 會社」 (McKesson and Robbins Inc.)의 不正事件⁽⁵⁾이 發生하였으며, 이 事件은 SEC의 強力한 影響下에 당시의 監查節次를 再整備하고 나아가 監查基準의 制定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중 요한 契機가 되었다. 이 會社는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會計事務所」로부터 15年 동안이나 財務諸表의 適正性에 대하여 肯定的인 監查意見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監查實施 중에 亘額의 不正이 發見되었다. 즉, 이 會社의 社長, 財務部次長, 「브릿지포드 事務所」의 入出荷擔當部長, 架空會社의 事務關係 擔當者 등의 4兄弟가 共謀함으로써, 架空의 海外去來를 통하여 總資產 8,700萬弗 중 1,900萬弗⁽⁶⁾의 架空資產을 計上하였던 것이다. SEC가 이 事件을 調査한 결과, 과거의 擔當 公認會計士는 당시 大多數의 公認會計士가 행하고 있던 모든 監查節次를 빠짐없이 행하였음이 確認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大規模의 不正이 그렇게 오랫동안 發見되지 않았던 理由로서는 監查方法이나 條件의 缺陷은 물론 從來의 監查節次 나아가 監查制度에 不備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事件을 契機로 監查節次의 再檢討는 물론 나아가 監查基準에 관한 概念이 形成되었다. 즉, 1939年에는 「監查節次의 擴充」(Extension of Auditing Procedures)이 公表되었고, 다시 1941年에는 「證券去來委員會規則」(SEC Regulation)에서 公認會計士의 監查證明書에 “監查가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的 與否를 記載하도록 規定하였다. 그러나 當時 最初로 사용된 用語인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言及이 없었으므로 理論家 또는 公認會計士에 따라 상당한 見解差異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을 確立하기 위한 많은 努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成文化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賛反論爭의 脅痛이 수반되었다.

監查基準의 制定에 반대하는 사람들⁽⁷⁾은 監查實務上의 節次는 標準化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니므로, 私的으로나 더우기 公的으로 監查規則을 强制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效果的인 監查基準의 制定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不必要한 것이며, 오히려 公認會計士의 獨立性을 罷免하고 나아가 公認會計士의 地位를 弱化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監查基準의 制定에 賛成하는 사람들은 監査에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事

(5) 大矢知浩司(1971), 「會計監査—美國에 있어서의 生成과 發展」, pp. 159-61, 中央經濟社, 東京, 參照。

(6) 그 後 1938年 11月, 不正이 摘發되었을 時點에 있어서의 架空資產은 2,100萬弗에 달하였다.

(7) 監查基準制定에 反對한 代表의 人物로는 당시의 大家로 認定받고 있었던 「몽고메리」(R.H. Montgomery)教授, 당시 「일리노이」州 公認會計士協會長으로 있던 「호우즈」(H.C. Hawes) 등을 들 수 있다.

項”이 存在하며, 이 범위 内에서 自立規制의 領域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즉, 規則 또는 基準은 매력없는 것이긴 하지만 現實社會에서 行動의 規則이나 基準은 모든 社會關係에 多樣한 形태로 存在하는 것이며, 自己規制가 餘他의 道德律·輿論 등보다 公認會計士自身 또는 大衆의 立場에서 卓越한 形式이라면, 自己規制의 適用에 대한 適切한 領域을 決定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監查에는 實務家의 判斷 또는 따로 存在하는 어떤 基準에 의하여 判斷되는 “客觀”과 節次가 基準에 適合한가 하는 “主觀”的 兩者가 필요하며, 이 客觀에 대해서 適切한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效果的 自己規制의 手段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안에 監查制度의 普遍化와 더불어 監查基準의 필요성은 現실적으로 더욱 強化되어 갔다. 실제로 反對論者들도 구체적인 “監查節次書”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지, 抽象的인 수준에서 최소한도의 客觀的 當爲의 存在 내지는 伸縮性있는 客觀化에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비교적 長期의 論爭과 折衷의 結果, 1947年에는 「監查基準試案」(Tentative 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이 작성되었고, 이어 1954年에 이르러 비로소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이 制定되었다.

2.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

1954年 이후 美國公認會計士協會(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에 의하여 認定·適用되어 온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은 一般基準(general standards) 3個項目, 現場業務基準(standards of field work) 3個項目, 報告基準(standards of reporting) 4個項目 등의 10個의 基準으로構成되어 있으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般基準

1. 監査는 監查人으로서 適合한 技術的 訓練과 高度의 熟練(proficiency)을 具備한 者에 의하여 遂行되어야 한다.
2. 受任業務에 관련된 모든 事項에 대하여 監查人은 精神的 態度의 獨立性을 維持하여야 한다.
3. 監査의 實施와 報告書作成에 있어서 正當한 職業專門家의 注意(due professional care)가 기울여져야 한다.

現場業務基準

1. 業務에 適合하게 計劃되고, 補助員은 있다면 適切히 監督되어야 한다.
2. 内部統制組織에의 信賴 및 이에 따라 監查節次가 制限될 試查의 範圍를 決定하기 위한 基礎로서, 既存의 内部統制組織에 대한 適切한 研究·評價가 있어야 한다.

(8) 1942年 5月 「일리노이」州 公認會計士協會總會에서 AIA 監查節次委員會委員長의 發言. 蘇眞德 (1973), 『우리나라 會計監查基準에 대한 考察』, 「經營論集」, 第VII卷, 第1號.

3. 監査 중인 財務諸表에 관한 意見의 合理的 基礎를 마련하기 위하여, 充分하고도 有效한 證據資料 (sufficient competent evidential matter)가 實查·立會·質問·確認을 통하여 獲得되어야 한다.

報告基準

1. 報告書에는 財務諸表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準據하여 作成되었는가 與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2. 報告書에는 그러한 原則이 前期와 관련하여 當期에도 繼續的으로 適用되어 왔는지 與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3. 報告書에 별다른 記載가 없는限, 財務諸表內의 情報公開(informative disclosures)는 合理的으로 適合한 것으로 認定되어야 한다.
4. 報告書에는 全體로서의 財務諸表에 관한 意見의 表明 또는 意見이 表明될 수 없다는趣旨의 主張이 包含되어야 한다. 全般的 意見이 表明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理由가 記載되어야 한다. 監査人의 姓名이 財務諸表와 관련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報告書에는 監査人의 調査一 있다면一의 性格 및 그가 부담하는 責任의 程度에 대한 明確한 指摘이 包含되어야 한다.

一般基準은 원래 人的인 基準으로서 監査人의 資格과 監査業務의 質的 評價에 관련된 것이다.⁽⁹⁾ 따라서 이것은 現場業務와 報告의 兩者에 공히 適用되는 總括的인 基準이 된다. 現場業務基準은 監査節次의 選擇的 適用을 規制하는 基準으로서 監査의 計劃性 및 證據의範圍·性格에 관련된 것이다. 報告基準은 意見表明에 대한 基準으로서 報告書의 記載內容과 責任範圍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基準들은 個別의이라기 보다는 相互依存의이며, 實제의 適用에 있어서는 항상 “重要性”(materiality)과 “相對的 危險性”(relative risk)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¹⁰⁾

특히 本稿의 中心課題가 되는 報告基準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第1報告基準에서의 “會計原則”이라 함은 狹意의 會計原則은 물론 會計慣習이나 그 適用의 方法을 포함하며,⁽¹¹⁾ “一般的으로 認定된……”은 財務諸表를 作成할 當時의 一般的 受容性을 뜻하는 것이라 반드시 唯一하거나 固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¹²⁾ 또한 “記載”는 단순한 ‘事實’의 指摘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全般的인 ‘意見’의 提示를 要求하는 것으로 解釋된다.⁽¹³⁾

第2報告基準에서의 “그러한 原則”이라 함은 第1報告基準에서의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과 同一하며, 全體로서 일단 選擇된 會計原則·慣習·方法이 繼續的으로 適用되었음

(9)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1971~1972) (©1973), Codification of Auditing Standards and Procedures, in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No. 1, Sec. 201,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New York.

(10) *Ibid*, Sec. 150.04~.05.

(11) *Ibid*, Sec. 410.02.

(12) *Ibid*, Sec. 411.02.

(13) *Ibid*, Sec. 410.02.

을 確認(또는 否認)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것은 當期의 財務諸表를 前期의 그것과 比較하여 얻을 수 있는 判斷이 有效하게 되는 重要한 必要條件을 確認(또는 否認)시켜 주는 것 이지만, 이것이 財務諸表의 比較可能性을 保障하는 것은 아님에 留意하여야 한다. 즉, 會計原則 外에도 會計的 推算, 報告實體의 變化는 물론 前期의 誤謬나 分類 또는 兩分類의 變化 및 去來性格의 本質的 變化 등에 의해서도 財務諸表의 比較可能性이 毀損될 수 있는 것이다. 監查人은 이러한 諸原因에 대해서도 '正當한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특히 比較可能性의 重要한前提가 되는 '會計原則適用의 繼續性'에 대해서 明白히 指摘⁽¹⁴⁾할 것 이 要求되는 것이다.

第3報告基準은 情報公開의 適合性에 관한 것으로 財務諸表의 形式·配列·內容(脚註包含)의 全般을 포함한다. 더우기 이 基準의 趣旨로 보아 報告書 作成日 現在에 最善의 健全한 判斷으로서 公開되어야 한다고 認定되는 것은 適合한 方法으로 公開할 것을 要求하는 것으로 解釋된다.⁽¹⁵⁾

第4報告基準은 財務諸表에 대한 綜合的 意見表明에 대한 基準으로서, 前段內容中의 "全體로서의……"의 修飾에도 不拘하고, 財政狀態나 그 變化 또는 經營成果에 대한 分離된 部分意見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¹⁶⁾ 또한, 後段의 내용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에 의하여 監查를 實施하지 않았을 경우에 獨立監查人の 責任程度에 대한 誤解를 막기 위한 规定이다.⁽¹⁷⁾

3. 監查基準說明書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은 監查節次의 選擇 適用에 있어서 普遍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基準⁽¹⁸⁾으로서 상당히 抽象的이고 伸縮的인 用語로 要約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具體的인 監查業務에 있어서 所期의 效果를 期待하기 곤란할 수 있다. 實際로 監查制度의 擴充에 따라 具體的인 監查基準 適用에 있어서의 過度한 態意性·主觀性을 排除하고, 아울러 標準的·指導的 指針으로서의 보다 具體的인 規程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美國公認會計士協會」에서는 「監查節次委員會」(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를 두어, 1939年 이래 1962年에 이르기까지 主要 問題別로 32號(No. 1~32)에 걸친 「監查節次說明書」(Statement on Auditing Procedure; SAP)를 發表하였으며, 1963年的 33號에서는 그 때

(14) 事實의 指摘 外에 意見의 表明을 포함한다.

(15) cf. *Ibid.*, Sec. 04~.06 and 560.01~.08.

(16) cf. *Ibid.*, Sec. 509.04.

(17) Loc. cit.

(18) AICPA(1950), Audits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 25.

까지 發表된 監查節次說明書를 整理·綜合하여 「監查基準과 節次」(Auditing Standards and Procedures—A Codification)를 制定하였다. 그후 다시 1977년에 이르기까지 21號(No. 34 ~54)에 걸친 主題別의 監查節次說明書가 追加로 發表되었다. 54號의 監查節次說明書를 끝으로, 「홀튼」(T.H. Holton)을 委員長으로 하는 1971~72年の 監查節次委員會는 33~54號의 監查節次說明書를 再整理하여, 1972年 11月 「監查基準說明書」(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SAS) 第1號로서 「監查基準과 節次의 集成」(Codification of Auditing Standards and Procedures)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¹⁹⁾

이는 1939年 以來의 監查節次委員會의 總決算이며, 이를 契機로 同 委員會는 監查基準執行委員會(Auditing Standards Executive Committee)로 名稱이 變更되어 監查基準을 說明하는 役割을 하게 되었다. 그 후 監查基準執行委員會는 1979年에 이르기까지 23回에 걸친 監查基準說明書(SAS. No. 2~24)를 公表하여 說明書를 改正 혹은 補完하였는 바, 說明書의 主要內容을 概略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章⁽²⁰⁾은 序說로서 獨立監查人の 責任과 機能,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의 內容, 重要性·相對的 危險性 및 監查業務의 質的 管理에 대한 說明 등을 담고 있다. 第2章은 一般基準에 대한 說明으로서 一般基準의 性格 및 獨立監查人の ‘訓練’·‘高度의 熟練’과 ‘精神的 獨立性’·‘正當한 注意’의 內容 등이 說明되어 있다. 第3章은 現場業務基準에 대한 說明으로서, 첫째 計劃과 監查實施 時期의 適合性, 先任과 後任監查人の 意見交換, 分析的 檢討節次의 內容이며, 둘째 内部統制組織에 關한 事項으로 調査·評價의 內容과 더불어 統計的 標本抽出의 性格, EDP 및 内部監查制度의 영향, 重大한 취약성에 關한 意思傳達 等의 內容이며, 마지막으로 合理的 證據의 內容과 特히 受取計定·在庫資產·長期投資資產에 대한 證據에 이어 被監查會社의 代表陳述書, 專門家의 使用, 監查調書 等에 대해 說明하고 있다.

第4章은 第1, 2, 3報告基準에 대한 說明으로 會計原則 準據性의 內容, 會計原則 適用의 繼續性의 內容과 함께 繼續性과 比較可能性과의 關係, 會計의 繼續性과 會計原則 適用의 繼續性과의 關係, 情報公開의 適合性과 責任範圍 및 部門別 情報 등을 說明하고 있다. 이어 第5章은 第4報告基準에 대한 說明으로, 無限定 意見(長文式 및 短文式)·限定意見·不適正意見·意見拒否(無意見)·部分意見(監查範圍과 表現方式)·非監查報告書의 區分 및 文章 表現에 대한 具體的 說明과 함께, 其他 監查人 또는 監查實施上의 特殊狀況에 있어서의 意見表達의 方法이 例示·說明되어 있다. 第6章에서는 앞 章에 이어 長文式 報告書를 비롯하여,

(19) 元來의 發表에서 委員間의 意見 不一致 事項 또는 限定的인 同意事項은 除外되었다.

(20) “第1章”은 Sec. 100以下의 內容(실제로는 Sec. 100, 110, 150)을 指摘하기 위하여 便宜上 使用되었다. 이하 第2~9章의 命名도 이에 準한다.

非正規의인 特殊類型의 報告書를 補充的으로 說明하고 있다.⁽²¹⁾

그 중 本 論議의 主要 對象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監查報告準則에 該當하는 것은 第4, 5, 6 章의 內容이며, 그 主要 題目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項 目	文 段
400 第1, 2, 3 報告基準	
410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準據性	.01—.04
411 監查報告書上の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準據하여 適正하게 表示”의 意味	.01—.09
420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適用의 繼續性	.01—.21
繼續性에 影響을 주는 會計의 變化	.06—.11
繼續性에 影響을 주지 않는 會計의 變化	.12—.19
繼續性 基準이 關聯되는 期間	.20
繼續性의 表現	.21
430 情報公開의 適合性	.01—.06
435 部門別 情報	.01—.18
500 第 4 報告基準	
505 比較財務諸表에 관한 報告	.01—.16
509 監查한 財務諸表에 관한 報告	.01—.50
516 非監查財務諸表	.01—.14
517 公認會計士가 非獨立의인 경우의 報告	.01—.06
518 消極的 證明 ⁽²²⁾	.01—.03
530 獨立監查人의 報告書의 日字	.01—.08
542 其他 必要한 監查節次를 適用하지 못한 條件들	.05—.06
543 다른 獨立監查人에 의한 監查部分	.01—.17
544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準據性의 缺如	.02—.04
545 不適合한 公開	.01—.05
546 非繼續性의 報告	.01—.17
550 監查한 財務諸表를 포함한 書類에 表示된 기타의 情報	.01—.06
560 後續事件	.01—.12
561 監查報告書日字에 存在하는 事實의 後續的 發見	.01—.10
600 其他의 報告書類型	
610 長文式 報告書	.01—.06

(21) 이후 第 7 章의 特殊問題(Sec. 710.01~.11 Filings under Federal Securities Statutes)에 이어, 第 8 章을 缺하고, 第 9 章의 CAP特殊報告(Sec. 901.01-.32 Public Warehouses—Controls and Auditing Procedures for Goods Held)가 있으나 本 論議와는 無關하므로 省略되었다.

(22) 消極的 證明(negative assurance)이란 財務諸表에 表示된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그것이 不適正하다는 事實이 發見되지 않았음을 指摘함으로써 消極的으로 適正性을 賦與하는 方法으로, 正規의 監查報告에서는 嚴格히 배격되지만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에 의한 監查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適切히 指摘된 特殊한 境遇에 限해서 許用되고 있다.

621 特殊報告書 ⁽²³⁾	.01—.11
630 Letters for Underwriters ⁽²⁴⁾	.01—.53
640 内部統制報告書	.01—.21
641 政府機関에 의하여設定된 基準에 基礎한 内部統制報告書	.01—.06

第2節 日本의 監査報告規程

1. 歷史的 背景

日本은 第2次 世界大戰 이전에 이미 職業監査人으로서의 計理士制度를 가지고 있었으며, 會計監査基準 및 同準則⁽²⁵⁾의 成文化도 比較的 일찍이 이루어졌다. 終戰後 經濟復興政策의 一環으로 設立된 經濟安定에는 率下機構로 企業會計審議會가 設置되었다. 1950年 7月 企業會計審議會는 當時 正規의 財務諸表監査가 時機尚早라는 批判에도 不拘하고, 中間報告로서의 「會計監査基準」 및 「監査實施準則」을 發表하였다. 그 후 6年餘의 漸進的 監査實務의 經驗에 입각하여 中間報告의 一部를 改正하여, 1956年 12月 25日 「會計監査基準」 및 「監査實施基準」(本報告)를 公表하기에 이르렀다. 그간의 經過에 대하여 監査基準改定序文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²⁶⁾

“……初年度에는 會計制度에 관한 監査를 實施하고, 그 後 각 年度별로 正規의 財務諸表監査를 위한 豐備的 段階로서 財務諸表項目의 一部를 部分的으로 監査하기始作하고 점차 그範圍를 擴大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正規의 財務諸表監査를 實施할 時期에 到來하였다.……”

이어 監査基準制定의 趣旨를 “監査人, 依賴人 및 一般關係人の 利害를合理的으로 調整하고 監査制度를 確固히 하는 基準을 提供하여 이의 圓滑한 運營을 피하는데 있다”⁽²⁷⁾고闡明함으로써 監査基準의 精神的 態度를 밝히는 한편, 適切한 運營의 必要性을 示唆하고 있다. 한편, 會計監査基準 및 監査實施準則의 改定과 더불어 證券去來法上의 監査證明의 實踐規範으로서 「監査報告準則」이 새로이 發表되었다.

그후 急速한 經濟成長에 따라 企業規模가 擴大되고 證券去來所에 第2部가 開設되는 등 監査對象業體가 急增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部의 被監査業體의 破產이 發生되어, 監査制度의 再檢討·整備에 대한 社會的 要請이 크게 擙頭되었다. 이에 따라 監査制度의 再整

(23) 現金主義 適用, 修正된 發生主義 適用, 非營利法人, 不完全한 경우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報告書 및 印刷된 報告書樣式 使用의 制限 등을 포함한다.

(24) 「證券法」(1933)에 의하여 證券去來委員會에의 登錄書類에 첨부하는 報告書로서, 非正規의 監査節次를 거쳐 公認會計士에 의하여 發行되며, 혼히 Comfort Letters라고도 한다.

(25) 日本의 監査實施準則과 監査報告準則의 制定·改定은 會計監査基準과 密接한 關聯(後述하는 이들 準則의 特性과 關係된다)을 가지고 進行되었으므로, 이들을 함께 說明하기로 한다.

(26) 企業會計審議會(1956), 『監査基準 設定에 관하여』(監査基準改定序文), 日本 大藏省.

(27) 上同.

備方策의一環으로 大藏省은 企業會計審議會를 召集하여 1965年 3月 18日 監查實施準則을 全面적으로 改定하기에 이르렀고, 이듬해인 1966年 4月 26일에는 監查基準 및 監查報告準則이 改定·公表되었다. 또한, 改定된 會計監查基準 및 監查實施準則·監查報告準則의 有效適切한 運用을 위하여 企業會計審議會는 必要에 따라 이들 規程에 대한 註解를 發表하기로 하였다.

2. 會計監查基準

1976年 7月 13日 企業會計審議會⁽²⁸⁾에서 改定된 日本의 會計監查基準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般基準

- 企業이 發表하는 財務諸表의 監査는 監查人으로서 適當한 專門的 能力과 實務經驗이 있고, 且該企業에 대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없는 者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監查人은 事實의 認定, 處理의 判斷 및 意見의 表明을 행하는데 있어서 항상公正不偏의 態度를保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 監查人은 監査의 實施 및 報告書의 作成에 있어서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正當한 注意를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 監查人은 業務上 알게 된 事項을 正當한 理由없이 누설하거나 濫用하여서는 안된다.

實施基準

- 監查人은 適切한 監查計劃에 의하여 秩序整然하고 適時에 監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監查人은 補助者를 使用할 경우, 適切한 計劃에 의하여 充分한 指導監督을 하여야 한다.
- 監查人은 内部統制組織의 信賴性의 程度를勘案하여 試査의 範圍를合理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 監查人은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表明을 위하여 監查對象의 重要性, 危險性 其他의 諸要素를 考慮하고, 合理적인 基礎를 얻을 때까지 監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報告基準

- 財務諸表에 添付해서 公表되는 監查報告書에는 監查人이 實施한 監査의 概要 및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을 明瞭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의 表明은 財務諸表가 企業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邁正히 表示하고 있는가 與否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監査의 對象으로 된 財務諸表에 影響을 주지 않은 事項이라도 次期以後의 財務諸表에 重要한 影響을 줄 것으로 認定되는 것에 대하여는 監查報告書에 補足하여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日本의 會計監查基準은 美國의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查基準과 大同小異하므로, 이하重複되는 說明을 省略하고 그 差異點에 대해서 간단히 檢討하기로 한다.

우선 日本의 會計監查基準은 第1一般基準에서 監查人의 經濟的 獨立性을 添加하고, 다

(28) 企業會計審議會의 說明. 이것은 基準에서는 基本的 態度만을 밝히고, 그 運用에 있어 準則 또는 註解의 時宜適切한 改定으로 對處할 意圖을明白히 나타낸 것이다. 이 점은 美國의 監查基準이 1954年 制定이래 不變으로 適用되고 있는 立場과相通하고 있다.

시 第 4一般基準에서 秘密保障 및 盜用禁止 條項을 插入하고 있다. 이들은 다같이 監查人의 倫理的인 責任을 強調하는 것으로, 美國에서는 이들은 精神的 態度의 獨立性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監查基準 이전의 前提로 看做되고 있다. 따라서, 日本會計監查基準에서 이를 새삼 強調하고 있는 것은 監查人の 倫理的 責任이 社會問題로 되어 왔던 日本 監查經驗의 一端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實施基準의 內容은 美國의 現場業務基準과 거의 같으며, 단지 第 1 實施基準에서 ‘適合(또는 適切)한 計劃’의 秩序性, 適時性을 補充・說明하고 있으며, 第 3 實施基準에서 ‘…合理的基礎를 마련하기 위하여 充分하고도 有效한 證據資料…’를 ‘合理的基礎’로 縮約⁽²⁹⁾하는 한편, 監查技術의 列舉를 省略하고 代身 充分有效性의 主要 考慮事項인 ‘重要性・危險性’⁽³⁰⁾을 添加하고 있다.

한편, 報告基準에 있어서 美國의 그것과의 差異는 한층 두드러져 보인다. 즉 第 1 報告基準에서 監查報告書의 記載方法을 概括的으로 規定하되, 監查의 概要를 記入할 것을 明文化하고 있으며, 아울러 記載事項의 明瞭性을 明文으로 要求하고 있다. 監查의 概要是 後述하는 報告準則 2項에 具體的으로 3個項目을 列舉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같이 美國 監查基準說明書에 있는 監查報告書의 標準文例에 包含되어 있는 것을 明文化한 것이다.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表明을 다시 第 2 報告基準에서 ‘財務諸表의 適正性’에 대한 意見表明으로 具體화되고 있으며, 이는 美國의 第 1, 第 2 報告基準은 물론 第 4 報告基準의 內容도 含蓄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또한 美國의 第 3 報告基準에 暗默的으로 含蓄된 것으로 解釋되었던 補充的 說明事項은 日本의 第 3 報告基準에서 明文化되고, 다시 報告準則 5에서 具體的으로 說明되고 있는데, 이것은 現代監查에서 補充的 說明事項의 重要性을 反映한 것이다.

3. 監查報告準則

日本의 監查報告準則은 監查報告基準의 特定事項에 대한 敷衍的 說明에 不過한 것이므로 美國의 監查節次說明書 또는 監查基準說明書에 비교하면 극히 簡潔하다. 1976年 7月에 改定된 監查報告準則은 다음과 같다.

(29) 물론 文章上의 縮約이 概念上의 縮小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合理的基礎’ 내지 ‘合理的證據’에 관한 論議는 監查證據論의 核心을 이루는 綜合的 概念으로서, 特定한 狀況下에서 監查人の 意見形成에 充分・有效할 뿐만 아니라, 必要性과 犠牲의 程度에 따라 技術적으로入手可能한 量(證據의 크기와 範圍)과 質(證據力의 強度)의 證據를 意味한다. 여기서 證據의 充分有效性은 주로 監查項目의 重要性・危險性 및 内部組織의 信賴度 등을 考慮하여 決定되며, 그 經濟性 내지入手可能性은 監查契約의 條件・會計資料의 整備狀況・依賴人 및 外部關係人の 協力程度・監查人の 技術能力 등에 따라 綜合的으로 判斷된다.

(30) 美國의 경우는 證據의 性格・範圍 뿐만 아니라, 監查業務全般(監查報告를 包含)을支配하는 事項으로서 監查基準에 後記하고 있다. (CAP, op. cit, Sec. 150.04~.05)

1. 監査報告書의 記載方式

監査人은 監査報告書에 實施한 監査의 概要 및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을 簡潔明瞭하게 記載하고, 作成日字를 기입하고 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2. 監査의 概要

實施한 監査의 概要에 대해서는 다음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1) 監査의 對象이 된 財務諸表의 範圍.
- (2) 監査가 監査基準에 準據하여 이루어졌는가?
- (3) 「通常의 監査節次」 및 그 때의 事情에 따라 必要하다고 認定된 다른 監査節次를 實施하였는가? 「通常의 監査節次」中 중요한 監査節次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뜻과 理由.
- (4) 監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중요한 部分에 대하여 다른 監査人の 監査의 結果 또는 監査報告書에 의거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

3.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

- (1) 個別財務諸表에 대해서는 다음에 揭記한 事項을 나타내고, 財務諸表가 會社의 財政狀態와 經營成績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與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1. 會社가 採用한 會計處理의 原則 및 節次가 「企業會計原則」에 準據하고 있는가의 與否.

2. 會社가 前年度와 同一한 會計處理의 原則 및 節次를 적용하고 있는가의 與否.

3. 財務諸表의 表示方法이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財務諸表의 表示方法에 관한 基準 또는 法令에 準據하여 있는가 與否.

前各號의 記載에 관하여 중요한 除外事項⁽³¹⁾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그 除外事項을 明示하고, 또한 그것이 財務諸表에 미치는 影響을 記載하여야 한다.

- (2) 連結財務諸表에 대해서는 다음에 揭記한 事項을 나타내고, 連結財務諸表가 企業集團의 財政狀態와 經營成績을 適正하게 表示하고 있는가 與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1. 連結財務諸表에 대해서 會社가 채용한 會計處理의 原則과 節次가 「連結財務諸表原則」에 準據하고 있는가의 與否.

2. 連結財務諸表에 대해서 會社가 前年과 동일한 會計處理의 原則과 節次를 適用하고 있는가의 與否.

3. 連結財務諸表의 表示方法이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連結財務諸表의 表示方法에 관한 基準 또는 法令에 準據하고 있는가의 與否.

前各號의 記載에 관하여 중요한 除外事項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個別財務諸表의 경우에 準하여 記載한다.

- (3) 除外事項이 財務諸表에 특히 重要한 影響을 준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財務諸表가 會社 또는 企業集團의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適正하게 表示하지 않고 있다는 뜻과 그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4.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의 保留

監査人은 重要한 監査節次가 實施되지 못하였음 등을 理由로 自己의 意見을 保證하는데 충분한合理的인 基礎를 얻지 못하여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을 表明할 수 없는 경우에는,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을 保留하는 趣旨 및 그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5. 補足的 說明事項

(31) 監査節次에 관한 除外事項을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正當한 理由에 根據하는 會計處理의 原則・節次의 變更은 특히 重要한 影響을 가친다 하더라도 除外事項에 該當되지 않는다(企業會計審議會(1966. 4. 26), 監査報告準則註解, 日本 大藏省).

合併·買受·災害 등 次期 以後의 財務諸表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이 貸借對照表日 後에 發生하고 또 監查報告書 作成日까지 該當事項이 判明되는 경우에, 監查人은 이를 監查報告書에 補足事項으로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이미 前項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報告準則 1, 2는 第 1 報告基準의 具體的 說明이다. 報告準則 3, 4는 意見表明의 方法에 대한 說明으로서 특히 '一般的인 認定된 會計原則' 대신에 特定規定을 硬直的으로 明示하고 있다. 報告準則 5는 前述한 바와 같이 第 3 報告基準의 具體的 說明으로서 補充的 說明事項의 範圍를 明示함으로써 監查人の 責任限界를 밝히고 있다.

요컨대, 日本의 報告基準·報告準則의 諸規定은 이미 美國의 監查基準 내지 監查基準說明書의 該當事項 중 특히 基本的 普遍的인 것을 抽出하여 新로운 體系위에 再整理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特性은 日本의 監查基準과 監查準則(實施準則과 報告準則)이 先進美國의 監查實務經驗을 吸收하는 데 있어서 先導的 機能을 擔當하였던 점을 考慮한다면 容易하게 說明될 수 있는 것이다.

第 3 節 우리나라 監查報告規定의 分析과 改善方向

1. 歷史的 背景

우리나라에 職業監查人制度의 導入은 1950年 3月의 「計理士法」(法律 第112號)⁽³²⁾과 1953年 12月의 「計理士法施行令」(大統領令 第848號)에서 起源한 것이나, 監查基準이 成文化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에 속한다. 즉, 1960年 8月 韓國公認會計士會⁽³³⁾는 率下機關으로 「會計監查基準起草委員會」를 設置하여 監查基準의 起草를 擔當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듬해인 1961年 4月에 「會計監查基準」을 公表하기에 이르렀다. 監查基準制度의 時代의 背景과 趣旨에 대해서 韓國公認會計士會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³⁴⁾

“…企業經營者 중에는 會計處理에 있어서 會計政策를 加味함으로써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과 背馳하여 財務諸表를 歪曲表示하는 例가 많으므로 職業的 專門監查人에 의한 財務諸表의 監査가 要請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監査에서는 社會的으로 認定될 수 있는 規範이 되며 監查人이 準據하여야 할 原則即 會計監查基準의 制定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會計監查基準은 社會一般이 이를 周知하고 監查人이 이를 遵守함으로써 비로소 監査에 對한公正妥當性이 認定되고 社會的 信賴性을 昂揚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當時의 監查基準制定은 不當한 會計政策에 의한 財務諸表의 歪曲表示를 防止하

(32) 過渡期의 性格을 가졌던 同法은 1966年 9月 「公認會計士法」으로 整備·代替되었으며, 다시 1968年 12月 監査法人의 設立 등을 骨字로 하여 改定되었다.

(33) 當時 「韓國計理士會」.

(34) 韓國公認會計士會(1961), 『會計監查基準 制定趣旨』

기 위한 監查制度의 精神的 態度의 聽明에 注眼한 것으로, 經濟的 與件의 造成이나 監查慣習의 成熟에서 由來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制度의 特性은 監查基準制定 後 10餘年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準則들——監查慣習의 缺如下에서 指導的·啓蒙的 役割을 擔當할 것이 要請되는——이 制定되지 않았다는 事實에서도 나타났다. 즉, 거의 70年代에 이르기까지 會計監查의 對象業體는 물론 監查報告의 利用者가 매우 限定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制度의 不備가 重要한 問題點으로 表面化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나 60年代 以來의 急速한 經濟成長과 國際協力의 增大 및 積極的인 企業公開政策의 結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監查對象業體와 監查報告의 利用者가 累積的으로 增加하였고, 이와 比例하여 監查制度의 制度의 整備의 必要性이 本格的으로 擡頭되었던 것이다.

먼저 會計監查 對象企業의 擴張은 法定監查 對象企業 특히 上場法人⁽³⁵⁾의 量的 增大에 크게 의존하였다. 1963年 15個社에 불과하던 上場法人의 數가 1980年 10月 現在 355個社로 急增하였는 바, 이는 「資本市場의 育成에 관한 法律」⁽³⁶⁾ 및 「企業公開促進法」⁽³⁷⁾을 비롯한 일련의 企業公開促進政策의 所產이며, 급격한 政策의 轉換이 없는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加速化될 展望에 있다. 또한 「證券去來法」에 규정된 上場法人 等 외에도 株式配當保障을 위하여 政府補助를 받는 會社,⁽³⁸⁾ 在韓 外國銀行支店,⁽³⁹⁾ 韓國科學技術院,⁽⁴⁰⁾ 地方公企業事業體,⁽⁴¹⁾ 證券會社⁽⁴²⁾ 等에 대하여 法定監查가 實施되고 있다. 한편 外資導入의 活發해짐에 따라 急增한 借款業體 및 合作會社의 大部分은 關係協定에 의하여 會計監查가 실시되며, 其他 公共機關·軍調達機關·國營企業體의 去來關係會社에 대한 監查, 金

(35) 「證券去來法」(1976. 12. 22 改正)은 證券管理委員會 또는 證券去來所에 財務에 관한 書類를 提出하는 者 중 “上場法人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그 書類의 内容에 관하여 “公認會計士”的 監查證明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182條 第1項).

(36) 1968. 11. 22. 制定.

(37) 1972. 12. 30. 制定.

(38) 「株式配當保障에 관한 法律」(1962. 12. 7. 制定, 法律 第1202號; 1963. 12. 6. 改定, 法律 第1568號)에 의 함. “政府는……補助金을 交付함에 있어서는 經濟企劃院이 指定하는 計理上[現在의 公認會計士에 해 당함]의 會計檢查[現在의 會計監查에 해 당함]를 거쳐야 된다”(同法 第6條의 2).

(39) 「外國換管理規程」(1964. 11. 27. 制定, 財務部告示 第361號, 1980. 10. 2. 65次 改定, 財務部告示 第872號)에 의 함. “外國銀行支店은 決算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營業期間의 決算報告書에 財務諸表(公認會計士의 監查證明이添付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同規程 第2~43條 第1項).

(40) 「韓國科學技術研究法」(1980. 12. 31. 制定, 法律 第3310號)에 의 함. 科學技術院은 政府가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監查를 받은 每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同法 第6條 第2項).

(41) 「地方公企業法」(1969. 6. 29. 制定, 法律 第2101號 1980. 1. 4 改正 法3233號)에 의 함.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 및 事業報告書와 其他書類에 內務部長官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查報告書를 첨부하여 次期議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同法 第35條 第3項).

(42) 「證券去來法施行令」第63條 第1項 第4號.

融機關의 與信對象企業에 대한 監查, 大規模企業의 系列企業群에 대한 監查 및 各種 企業의 自體目的을 위한 監查 등이 實施되고 있어서, 會計監查의 對象은 近來에 이르러 量的으로 크게 擴張되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會計監查의 質的 構成에 있어서도 從來에는 信用目的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 있으나, 最近에 이르러 投資目的을 위한 會計監查가 支配的인 위치로 浮上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現代 會計監查를 “投資者 保護를 위한 監查”로 特징지을 정도로 先進諸國이 이미 經驗한 現象으로서, 特히 監查報告가 多數의 非專門的인 利害關係者들을 對象으로 해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特性을 갖는다. ⁽⁴³⁾

이에 따라 監查制度整備의 一環으로 1972年 11月 韓國公認會計士會는 奉下「會計監查研究委員會」가 起草한 「監查實施準則」과 「監查報告準則」을 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公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準則에 비하여 監查基準은 무려 10餘年前에 過渡期의으로 制定된 것으로 監查準則과 관련하여 監查基準을 調整할 必要가 있었으며, 아울러 원래 基本的인 精神內容을 抽象的으로 規定한다는 監查基準의 精神에 비추어 既存의 會計監查基準이 비록 啓蒙的인 趣旨에서 라지만 지나치게 複雜한 内容을 포함하고 있다는 批判이 擡頭되었다. 이에 따라 1973年 8月의 「財務諸表의 監查證明에 관한 規定」(財務部令 第968號)의 公布에 뒤를 이어, 1974年 10月 韓國公認會計士會는 會計監查研究委員會가 起草한 바에 따라 會計監查基準을 改定하기에 이르렀다. ⁽⁴⁴⁾ 또한 會計監查의 實務와 慣習의 發展과 더불어 監查實施 및 監查報告準則도 계몽적 성격을 탈피하고 實踐的 特例條項을 추가하여 1976年 8月 4日 제 2차 改正을 하게 되었다.

한편, 監查基準 및 準則의 整備와 併行하여 監查報告의 社會的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職業監查人인 公認會計士의 責任도 強化되었다. 특히 改正證券去來法은 從來의 公認會計士法에 의한 刑事上の 責任⁽⁴⁵⁾ 외에 民事上の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하고 있다. ⁽⁴⁶⁾ 또한 最近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定」 및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定」의 制定과 더불어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이大幅 改定됨에 따라 監查準則 등의 再

(43) 그외에도 監查範圍나 主要內容의 現代化, 監查의 定期性과 함께 監查對象의 量的 底邊確保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4) 이와 더불어 監查報告準則의 修正財務諸表에 관한 規定이 刪除되었다(後述).

(45) 故意로 實實을 隱蔽하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 公認會計士는 2年 以下의懲役・禁錮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公認會計士法 第20條)

(46) 重要한 虛偽記載 또는 記載漏落을 事實에 反하여 (適正한 것으로) 證明(故意 및 過失을 포함한다)한 公認會計士는 그로 因하여 損害가 發生한 善意의 投資者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며, 그 履行을 保障하기 위하여 財務部長官이 保險加入 등을 命할 수 있다(證券去來法 第197條, ①項 및 ③項 參照).

檢討를 必要로 하고 있다.

2. 會計監查基準

1974年 10月 改定된 우리 나라의 「會計監查基準」은 다음과 같다.

一般基準

1. 監查는 監查人으로서의 專門의 知識訓練과 實務經驗을 具備하고 當該企業에 대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없는 者에 의하여 行하여야 한다.
2. 監查人은 監查職務에 關聯되는 모든 事項에 대하여 恒常公正不偏의 態度를 堅持하여야 한다.
3. 監查人은 監查의 實施와 報告書作成에 있어서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正當한 注意를 가지고 職務上의 義務와 責任을 다하여야 한다.

實施基準

1. 監查人은 監查計劃을 作成하고 그에 따라 秩序整然하게 監查를 實施하여야 하며, 補助者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徹底히 監督하여야 한다.
2. 監查人이 監查節次의 適用方法 및 日數를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企業의 内部統制組織과 그 運用狀態를 考慮하고 效果와 鑑性을 比較秤量하여 委嘱者에게 過重한 負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監查人은 監查할 項目的 重要性과 誤謬發生의 危險程度를 參酌하여 그때의 事情에 따라 適切한 監查結果를 選擇適用하여 監查結果의 意見 表明에 대하여 立證이 될만한 合理的인 證據를 確認하여야 한다.

報告基準

1. 監查報告書에는 監查人이 實施한 監查의 範圍, 會計의 處理 및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을 簡潔明瞭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2. 監查報告書에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準據 與否와 前年度와 關聯하여 繼續的으로 適用되어 있는가의 與否를 表示하여야 한다.
3.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일지라도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에 重大한 影響이 미칠 可能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이를 監查報告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4. 監查人の 意見表明에 있어서 限定, 不適正 및 無意見에 該當하는 事項이 있는 境遇에는 그 要旨를 監查報告書에 記載하여야 하며, 財務諸表에 表示된 項目中 監查報告書에 指摘한 事項이 없는 것은 適正한 것으로 看做된다.

改正「會計監查基準」은 1961年 制定되었던 從來의 「會計監查基準」의 過渡期의 項目을 과감하게 削除·修正한 것으로, 그 性格을 明白히 理解하기 위하여 먼저 改正事項과 그 理由를 簡略히 檢討하는 것이 有益할 것이다.

먼저 一般基準은 원래 5個 基準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을 3個 基準으로 縮少한 것이 두드러진다. 즉 第4一般基準이었던 秘密維持, 盜用禁止의 條項⁽⁴⁷⁾을 監查人の 倫理的 前提로 보아 削除하였으며, 또한 第5一般基準이었던 監查의 機能 내지 監查人の 責任範圍를 現代 財務諸表監查의 前提로 보아⁽⁴⁸⁾ 監查基準에서 除外하였다. 第1, 2, 3一般基準은 거의 같

(47) 監查調書의 保存을 포함한다.

(48) CAP(1972), op.cit., Sec. 110.01~.09 參照.

으며, 다만 第 1 基準의 “専門的 能力”을 “専門的인 知識訓練”으로 具體化하였으며, 第 2 基準에 ‘公正不偏’과 併記되었던 “不偏獨立性”을 公正不偏에 포함되는 重複된 概念으로 보아 削除하였을 뿐이다.

實施基準에 있어서도 과거 啓蒙的으로 提示되었던 第 4, 5 基準을 削除하여 3個 基準으로 縮少하였다. 즉, 舊 「會計監査基準」의 第 4 實施基準이었던 ‘企業會計原則 및 繼續性의 準據與否의 確認’은 報告基準에서 죽급된 것으로 充分하다고 보아 削除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第 5 實施基準이었던 ‘企業獨自의 經理規程 및 準則의 準據與否의 確認’도 時代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아 削除되었다. 第 1, 2, 3 實施基準은 前進的인 監查計劃의 特性에 비추어 第 1 基準에서 監查計劃作成의 “事前性”을 省略한 外에는 改正 前과 同一하다.

한편, 우리의 主要한 관심 對象인 報告基準에 있어서도 원래의 第 2 報告基準이었던 ‘財務諸表의 適正性 指摘’을 無意味한 說明으로 보고 削除하여 4個基準으로 縮少하였다. 아울러 第 1 報告基準에 “監査의 概要”를 “監査의 範圍”로 修正하여, 報告書 記載事項을 具體的으로 指摘하고 監査人の 責任限界를 分明히 하였다. 第 2 報告基準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은 원래 第 3 報告基準의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을 修正한 것으로, 企業會計原則의 下位概念인 財務諸表規則을 省略하였을 뿐만 아니라, 監査의 對象이 非營利法人 내지 政府會計에 擴充된 現實까지를勘案하여 彈力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또한 第 3 報告基準(改正前 第 4 報告基準)中의 “次期 以後에 企業의 財政狀態…”에서 文章內容이 歪曲될 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하여 “次期 以後에”가 削除되었다.⁽⁴⁹⁾ 마지막으로 第 5 報告基準의 “限定, 不適正 및 無意見에 該當하는 事項”은 改正前 第 5 報告基準의 “限定事項”을 修正하여 그 内容을 明白히 한 것이다.

이제 改正後의 「會計監査基準」을前述한 美國의 「一般的으로 認定된 監査基準」 및 日本의 「會計監査基準」과 對比하여 보면 〈表 1〉과 같다.

〈表 1〉에서 우리나라의 監査基準은 美國 및 日本의 監査基準으로부터 거의 비슷한 크기의 影響을 받았으며, 또한 時代的 與件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比較的 成功的으로 折衷・統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報告基準에 있어서 이러한 性格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의 第 1 報告基準은 日本의 第 1 報告基準에, 第 2 報告基準은 美國의 第 1 및 第 2 報告基準에, 第 3 報告基準은 日本의 第 3 報告基準에, 第 4 報告基準은 美國의 第 3 및 第 4 報告基準에 주로 對應하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의 論議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報告基準을 하나하나吟味・檢討하

(49) 이에 대해서는 本項 末尾에서 다시 具體的으로 論議될 것이다.

〈表 1〉 韓國·美國·日本의 監查基準의 要約對比

國別 區分	韓 國	美 國	日 本
一 般 基 準	1. 專門的 知識訓練, 實務經驗 및 經濟的 獨立性 2. 公正不偏의 態度 3.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注意	1. 技術的 訓練 및 高度의 熟練 2. 精神的 態度의 獨立性 3. 正當한 職業專門家의 注意	1. 專門的 能力, 實務經驗 및 經濟的 獨立性 2. 公正不偏의 態度 3. 職業的 專門家로서의 正當한 注意 4. 秘密保持 및 盜用禁止
實 施 基 準	1. 監查의 計劃性·秩序性 및 補助者 監督의 優底性 2. 内部統制組織의 考慮와 監查의 經濟性 3. 重要性·危險性 등을 參酌한 合理的 證據의 確認	1. 監查의 計劃性 및 補助者 監督의 適切性 2. 試查範圍의 決定을 위한 内部統制組織의 研究·評價의 遂行 3. 實查·立會·質問·確認에 의한 充分·有效한 證據資料의 獲得	1. 監查의 計劃性·秩序性·適時性 및 補助者 監督의 計劃性·充分性 2. 内部統制組織의 信賴性을 勘案한 合理的인 試查範圍의 決定 3. 重要性·危險性 등을 考慮한 合理的 基礎의 確認
報 告 基 準	1. 監查의 範圍 및 會計處理·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의 簡潔明瞭한 記載 2. 會計原則의 準據與否 및 同繼續適用與否의 表示 3. 重要事項의 補充的 記載 4. 限定·不適正·無意見 該當事項의 記載 및 非指摘事項의 適正性 推定	1. 財務諸表에 대한 全般的 意見의 表明 또는 拒否 및 監查의 性格·監查人의 責任의 明記 1. 會計原則準據與否의 記載 2. 同 繼續適用與否의 記載 4. (中段) 意見拒否理由의 記載 3. 非指摘事項의 適正性 推定	1. 監查의 概要 및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의 簡潔明瞭한 記載 2. 財務諸表 表示의 適正性 3. 重要事項의 補足的 記載

여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提示하기로 한다.

먼저 第 1 報告基準은 監查報告書의 記載方法에 대한 基準으로, 報告書의 記載要件으로서 監查의 範圍와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을 들고 있다. 監查의 範圍는 監查報告書의 利用者が 意見表明의 信賴性을 判斷하는 尺度가 되는 것으로서, 監查의 對象이 된 財務諸表의 範圍는 물론, 監查基準의 準據性 與否,一般的인 監查節次와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된 監查節次의 實施與否를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의 表明은 監查의 窮極的 目標이며, 監查報告書의 核心을 이루는 것으로 監查實施의 綜合的·結論的 判斷으로서 適正性與否에 대한 意見을 表明하는 것이며, 文章全般의 趣旨上 無限定·限定·不適正 意見은 물론 意見拒否(無意見)를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會計處理의 適正性'은 財務諸表 表示의 適正性의 部分의前提이고, 이에 대해서는 第 2 報告基準에 別途로⁽⁵⁰⁾ 表示되어 있으므로, 第 1 報告基準에서는 省略하는 편이妥當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第 1 報告基準은 이들의 내용을 簡潔하고 또한 明瞭하게 表示할 것을 要求하고 있는데, 이는 監查의 概要와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은 물론 監查報告書全般에 걸쳐서 關聯 記載事項의 取捨選擇과 그 組織 및 文章表現을 支配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第 2 報告基準은 會計處理에 관한 意見表明에 대한 基準으로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準據與否 및 그 繼續適用의 與否를 記載하도록 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은 美國의 例에 따라,⁽⁵¹⁾ 會計原則은 물론 會計慣習, 會計方法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選擇的으로 存在할 수도 있고 會計慣習의 發達이나 與件의 變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概念으로 伸縮性있게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會計原則의 準據與否 및 그 繼續適用의 與否는 단순한 事實뿐만 아니라 監查人の 意見으로서 提示되며, 이는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의前提가 되는 部分意見이 된다.⁽⁵²⁾ 따라서, 第 2 報告基準은 性格上 第 1 報告基準에서 規定된 報告書 記載要件인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에 대한 前提의 記載要件을 規定한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⁵³⁾

第 3 報告基準은 重要事項의 補充의 記載에 대한 基準으로 現代監查制度의 發達을 反映한 것이나, 文章表現에 있어서 多少의 誤解를 惹起할 우려가 있다.⁽⁵⁴⁾ 즉, 重要度에 따라 報告書에 記載하여야 할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에 ① 財務諸表 作成人の 不當한 會計處理나 表示로 因한 重要한 漏落事項, ② 法規 等에 의거하여 財務諸表⁽⁵⁵⁾에 表示되지 않은 重要事項, ③ 監查中인 財務諸表에는 원래 影響을 미치지 않는 重要事項中 어느 것 까지(全部 또는 一部)를 包含시켜야 할 것인가가 明白하지 않다. 이들 중 ①의 事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餘他의 報告基準과의 關聯을 考慮하면 比較的 明白하다. 즉, 이들은 第 4 報告基準의 “限定, 不適正 및 無意見에 該當하는 事項”으로서 記載되어야 할 것이다.⁽⁵⁶⁾ 第 3 報告基準의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이 ②의 事項을 포함하는지 與否

(50) 第 1 報告基準에서 “會計處理”를 刪除하면, 第 2 報告基準은 第 1 報告基準의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의 記載’의前提의 記載要件을 規定한 것으로 解釋될 수 있으며, 따라서 第 4 報告基準이 그 後續의 記載要件(無限定意見의 경우는 例外)을 規定한 것과 對稱될 것이다.

(51) cf. CAP (1972), *op.cit.*, Sec. 410.02~.04.

(52) 日下部與市에 의하면, 監查意見은 ① 公正妥當한 會計原則의 遵守에 관한 意見, ② 會計原則의 適用上의 繼續性에 관한 意見, ③ 財務諸表 表示의 合法性에 관한 意見, ④ 財務諸表 全體의 適正性에 관한 意見의 4個項目으로構成되며, ④가 最終結論이고 ①~③은 그前提가 되는 部分意見이라 한다. 日下部與市(1971), 「新會計監查詳說」, pp. 74-25, 中央經濟社, 東京.

(53) 註 50) 參照.

(54) 그밖에 後述하는 바와 같이 第 4 報告基準과의 順序도 問題가 된다.

(55) 財務諸表 附屬明細書는 물론 脚註를 포함한다.

(56) 물론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形成에 反映된다. 한편 ②의 事項이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形成에反映되어야 할 것인지는 다소 不分明하지만, 監查基準에서의 “財務諸表”的 概念을 伸縮的으로

는明白하지 못하다. 第3報告基準의 具體的 說明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이는 「監查報告準則」의 一의 4 「財務諸表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의 表示」⁽⁵⁷⁾에 의하면, 貸借對照表日後에 發生한 重要事項 외에도, 財務諸表規則이 정한 脚註事項 外의 「財務諸表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이나 其他 財務諸表의 理解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註釋으로서 補充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서 示唆받을 수 있는 바와 같이 第3報告基準의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이 貸借對照表日 現在의 財務諸表에 影響을 미친 事項을 포함한다면, 그後段은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에 重大한 影響이 미치거나 미칠 可能성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로 修正하는 것이妥當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財務諸表」의 概念을 財務諸表規則 등에 依據하여 硬直의로 限定하는 것은 監查基準의 抽象的・精神的 特性에 符合되지 않는 것으로, 監查基準에서의 財務諸表의 概念은 必要에 따라 改定될 수 있는 法規上의 財務諸表의 普遍的 範圍를 網羅하는 것으로 伸縮性있게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즉, 貸借對照表日 現在 財務諸表에 影響을 미치는 事項 등은 原則적으로 財務諸表脚註 등으로 表示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監查基準上の 「財務諸表」에 포함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⁵⁸⁾ 요컨대, 監查基準全般의 趣旨로 보아 第3報告基準의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은前述한 ①, ②의 事項을 排除하고, ③의 事項⁽⁵⁹⁾만을 포함하는 明瞭한 表現, 예컨대 「監查對象이 된 財務諸表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事項」으로 修正하는 것이妥當할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第3報告基準 後段의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에 重大한 影響이 미칠 可能성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는 「次期 以後의 (또는 監查報告書가 利用되는 時期에 걸쳐)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에 非正常的으로 重大한 影響이 미칠 可能성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로, 또한 「監查報告書에 記載…」는 「監查報告書에 補充的으로 記載…」와 같이 修正하는 것이 明瞭할 것이다.

第4報告基準은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表明에 있어서의 附隨的 記載要件에 대한 基準으로서, 限定・不適正・無意見에 해당하는 事項의 摘記와 나아가 非指摘事項의 適正性 推定을 規定하고 있다. 換言하면 報告書에 無限定意見을 表現하지 않는 境遇에는 그 理由를 밝혀

解説하여(後述 參照) 反映시켜야 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③의 事項은 '純粹한' 補充的 記載事項으로서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形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57) 筆者 第3報告基準의 "미칠 可能성이 있다고 認定되는……"과 比較.

(58) 물론 이들이 實제로 財務諸表에 表示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補充說明으로 記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第3報告基準의 解釋과는 別個問題이다(第3報告基準, 「監查報告準則」의 4 및 註(66) 參照).

(59) 물론 貸借對照表日 後에 發生한 事件으로 報告書作成日까지 判明된 事實에 限한다(「監查報告準則」의 4 參照).

야 하며, 그範圍는 財務諸表上의 適正하지 못한 모든 事項을 網羅한다. 이것은 無限定意見報告書에 添付되는 財務諸表의 信賴性을 높이는 데 效果的인 規定이긴 하나, 이를 지나치게 硬直的으로 解釋하면 監查人の 責任이 過重하게 될 憂慮가 있다.⁽⁶⁰⁾ 따라서 第4報告基準의 適正性推定은 重要性 등에 따라 伸縮的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第4報告基準은 第1報告基準의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表明'과 直接 關聯되어진 것임에 比하여, 第3報告基準의 補充的記載事項은 그와 直接의 關聯 없이 意見表明 後에 記載될 性質의 것이다. 또한 實際로 限定事項 등은 意見表明과 관련하여 빈번히 나타나는 반면에, 補充的記載事項은 對象業體의 特性·監查의 範圍나 監查人の 判斷에 따라 상당한 分散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第4報告基準과 第3報告基準의 順序를 서로 바꾸는 것이 보다 合理的일 것이다.

結論的으로, 우리나라의 報告基準은 美國·日本의 그것을 比較的 成功的으로 折衷·統合하고 있으나 文章表現·順序에 多小의 改善의 餘地를 남기고 있으며, 名實相符한 基準으로서의 役割을十分發揮하기 위해서는 그適用에 있어서 伸縮의이고도 慎重한 解釋이 要望되고 있다.

3. 監查報告準則

1976年 10月 改正된 우리나라의 監查報告準則은 總則을 포함하여 5個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體系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一. 總 則

1. 監查報告書의 記載方式
2. 監查의 範圍
3. 財務諸表에 대한 意見
4. 財務諸表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의 表示

二. 監查報告書

1. 監查報告書의 種類
2. 短文式監查報告書의 內容

三. 適正意見을 表明할 수 없는 事由

1. 監查範圍의 制限
2.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違背
3. 公表된 韓國公認會計士會의 意見 및 事例의 違背
4. 繼續的으로 適用되지 않은 會計原則
5. 不確實性

四. 短文式 監查報告書의 特例

(60) 더우기 다음 章에서 指摘되는 바와 같이 限定事項이 지나치게 些少하다고 생각되는 事項까지擴大되어, 監查報告書의 明確性을 해치는 報告實務上의 問題點도 있다.

1. 特定事項의 強調
2. 다른 監查人の 監査報告書의 引用

五. 監査人の 意見表明

1. 適正意見
2. 限定意見
3. 不適正意見
4. 無意見
5. 監査를 하지 아니한 財務諸表
6. 前年度 財務諸表에 대한 監査人の 意見
7. 意見表明에 있어서의 遵守事項
8. 財務諸表에 대한 註釋
9. 監査報告書에添附되는 財務諸表의 性格

이러한 報告準則의 內容은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美國의 監査基準說明書 및 日本의 監査報告準則의 影響을 크게 받을 것이다. 즉, 美國의 監査基準說明書의 4~6章은 監査報告基準의 單純한 說明에 그치지 않고, 監査報告實務上의 主要問題의 分析 및 具體的인 事例 등을 포함하는 具體的이고도 綿密한 說明임에 비하여, 日本의 監査報告準則은 監査報告基準의 說明으로 극히 簡潔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의 監査報告準則은 이들 兩者를 折衷·統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總則은前述한 日本의 監査報告準則의 全文과 거의 同一한 것으로 監査報告基準을 보다 明瞭하게 規定하고 있다. 또한 2章 以後의 內容은 대체로 美國의 監査基準說明書 1號의 該當內容을 整理·要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監査報告準則 등이 先進外國의 關係規定의 折衷·統合에서 出發하였고 또한 影響받고 있다는 것은 不可避하기도 하거니와 어떤 意味에서鼓舞的인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成熟된 監査慣習의 缺如라는 狀況下에서 이와 같은 先進制度의吸收는 可能한 試行錯誤의 過程을 거치지 않고도 監査報告制度의 效果的發展에 寄與할 수 있기 때문이다. 實際로 우리나라의 監査報告準則은 監査報告實務를 指導·啓蒙하는 機能을遂行하고 있으며 그範圍內에서 監査經驗이 蓄積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나라의 監査報告準則에서는 實際로 發表可能한 問題 全般에 걸쳐서 具體的인 模範을 提示할 수 있도록 範圍의 量的 質的擴張이 要望되고 있다. 이러한 範圍擴張에는 신중한 研究가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研究에 있어서 先進外國의 監査制度는 무엇보다 貴重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監査基準이 상당한 普遍性을 갖는 反面에 報告準則의 具體的인 規定은 監査對象業體나 監査報告書 利用者 등의 監査與件에 따라 適合히 變更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充分히 留意하여야 한다. 즉, 우리는 先進 監査制度의 신중한吸收는 물론 우리나라의 監査與

件의 特殊性에 適合하는 監查慣習을 形成하여 가는 데 努力を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에 說明하는 會計監查研究委員會의 意見書와 報告準則과의 有機的 關聯을 維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監查報告實務上의 特殊問題에 대해서는 美國의 個別主題別(綜合編纂 以前)의 監查節次說明書 내지 監查基準說明書와 類似하게 일단 意見書의 形式으로 發表하였다가, 상당한 論議와 蒸溜의 期間을 거친 後 報告準則으로서 吸收하는 것이 바람직한 方法으로 보인다.

4. 會計監查研究委員會 意見書

韓國公認會計士會內의 會計監查研究委員會에서는 必要에 따라 會計監查基準 및 監查準則(監查實施準則과 監查報告準則)에서 未備한 事項이나 會員(公認會計士)의 質問事項에 대해서 研究·討議하고, 그 意見을 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意見書의 形式으로 會員 등에게 配布하고 있다. 元來 이러한 審議事項은 示唆的인 意見의 提示로서 그 規範性이 弱하고 實務經驗과 追加的인 論議를 거쳐서 伸縮的인 修正·發展을 期待한다는 점에서, 美國의 成文化(codification) 以前의 監查節次說明書 내지 監查基準說明書에 該當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會計監查研究委員會의 意見書는 指導的·啓蒙的 機能을 가지고 監查經驗을 先導하며, 또한 監查與件上의 特殊性을勘案하여 監查報告準則을 檢討 내지 擴充하는 重要한 經路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積極的인 役割이 期待되고 있다.

一部에서는 이들 意見書가 그 重要한 役割에도 不拘하고 充分한 研究檢討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發表되고 있다는 非難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問題點은 學界·實務界의 보다 廣範한 審議로 補完되어 질 수 있는 것이며,不然이면 硬直的인 結論보다는 異論을 包容할 수 있도록 伸縮的인 意見을 提示한 후 이를 實務經驗 등을 통하여 修正補完하는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過去보다 是正된 것은 사실이나 意見書가 監查與件 등의 變化에 신속하게 對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후 指摘되고 있다. 意見書는 監查基準은 물론 監查準則에 비하여도 가장 伸縮的으로 時宜의 變化에 對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案件이나 質問의 提起에 보다 신속히 對應할 것은 물론 이미 發表된 意見書의 時宜適切한 修正에도 신속해야 할 것이다.

다만 質問에 대한 신속한 解答을 위하여 體系的인 審議가 困難하다면 이들을 일단 個別의 事項으로서 發表한 뒤에, 體系的인 研究·補充에 의하여 改定하거나 또는 體系化된 後續意見書에 의하여 代替하는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第3章 監査報告書의 事例分析

監査報告 關係規程 自體의 檢討·分析 外에 이와의 關聯下에 監査報告書의 事例를 檢討 하는 것은 두 가지 方向에서 有益할 것이다. 우선 監査報告書를 概括的으로 檢討함으로써 監査報告規程이 監査實務에 미치는 影響의 方向·範圍·程度를 알 수 있을 것이다. 逆으로 監査報告書에 나타난 問題點을 具體的으로 分析함으로써 우리나라 監査制度의 中樞를 이루는 關係規程에 어떻게 反映·修正될 수 있는가를 摸索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報告書에 나타나는 特定性格이나 問題點은 關係規程과 直接 關聯없이 監査人 또는 監査對象의 特性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監査報告 關係規程은 直接的으로든 間接의 으로든 監査報告實務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論議의 對象은 公表된 監査報告書, 특히 1980年 중에 公表된 上場會社의 監査報告書를 中心으로 한다. 또한 以下の 論議는 報告書에 表示된 報告內容을 中心으로 하는 것 이지 監査節次 全般을 評價⁽⁶¹⁾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監査報告書의 内容은 監査節次全般과 密接한 有機的 關聯을 가지는 것이므로, 以下の 論議가 반드시 監査報告書의 體制나 文章表現에 關心을 局限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第1節 우리나라 監査報告書의 事例와 問題點

1. 監査報告書의 意見種類別 分布

企業公示制度에 따라 證券去來所에 公開된 最近의 監査報告書 345件⁽⁶²⁾의 意見種類別 分布는 <表2>와 같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監査報告書의 대부분(98.8%)이 適正意見 또는 限定意見으로, 不適正意見이나 無意見은 매우 드문 편이다. 또한 適正意見은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여 限定意見을 두배 이상 앞지르고 있다.

이는 監査報告制度가 급속히 整備되기 시작하였던 1974年에 비하여 상당한 變化를 보이고 있었다.當時 137個의 上場會社 중 117件의 監査報告를 調査한 바에 의하면, 適正意見

(61) 實際로 試査로 特徵지워지는 現代監査節次를 全般的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單純한 監査節次의 檢討나 나아가 再監査로서도 解決될 수 없는 問題點이 있을 수 있다.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 監査에 대한 信賴性의 昂揚을 主目的으로 구성한 「監理委員會」에서도 “監理”的範圍를 重要性 등에 따라 適切한 抽象的·原則的 水準에서 局限시킴으로써 이러한 問題를回避하고 있다.

(62) 上場會社 355個社 중 10個社의 監査報告書는 資料關係로 調査對象에서 除外되었음. 調査對象 345個社의 會計年度는 1978. 7. 1~1980. 3. 31 사이의 1年間이었고, 대부분(310個社) 1979. 1. 1~1979. 12. 31의 1年間이었음.

〈表 2〉 監査報告書의 意見種類別 分布

意 見 區 分	件 數	構 成 比
適 正 意 見	231件	66.9
限 定 意 見	110	31.9
不 適 正 意 見	—	—
無 意 見	4	1.2
計	345件	100.0

資料：韓國上場會社會社協議會，「上場會社總鑑」1980.7.

은 16件(13.7%)에 불과하고, 限定意見이 무려 95件(81.2%), 不適正意見이 4件(3.4%), 無意見이 2件(1.7%)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變化는 限定意見의 비중이 크게 줄고 適正意見이 대폭 늘어 났다는 것이다. 원래 1974년의 監査報告에서는 특히 전년도에 있었던 證券去來法改正에 의한 公認會計士 責任強化⁽⁶³⁾의 영향으로 限定意見의 수가 크게增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限定意見의 “濫用”이 監査報告의 明瞭性 基準과 관련하여 상당한 問題點으로 지적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變化는 일단鼓舞的인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⁶⁴⁾ 즉, 이는 公認會計士의 監査責任의 적극적 受容 내지는 資質向上을 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른 觀點에서 監査報告의 適正意見이 增加한 반면 不適正意見이 한 件도 없다는 것은 監査報告意見이 上場會社에 友好的으로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變化는 上場會社의 會計實務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限定事項이 財務諸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충분히 認定되는 경우에도 會社의 立場을 고려하여 不適正意見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監査報告의 意見區分에 관한 實務的인 慣例 또는 指針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 本節에서는 意見種類別로 몇몇 事例⁽⁶⁵⁾를 分析하고 일반적인 問題點을 抽出하여 보기로 한다. 다만 適正意見報告의 경우에는 報告實務上 별다른 問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事例分析은 省略하기로 한다.

2. 限定意見報告書

限定意見報告書에 있어서 특히 눈에 뜨이는 變化는前述한 바와 같이 1974年에 비하여

(63) 公認會計士의 損害賠償責任 新設. (1973年 2月).

(64) 上場會社의 대부분이 비교적 會計制度가 정비되어 있고, 會社의 理解와 協助에 의하여 限定事項을 財務諸表에 적절 修正表示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限定意見의 비중(31.9%)은 아직도 높다고 할 수 있다.

(65) 以下の 事例는 1980年에 국한하지 않고 수년간의 監査報告事例에서 발췌한 것이나 問題의 本質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修正되었음.

限定意見의 件數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件當 限定事項數도 크게 減少하였다는 점이다. 즉, 1974年에는 限定事項數가 件當 平均 5.2個로 매우 많았으며, 최고 24個의 限定事項이 한 報告書에 列記되어 一般大衆이 따로 이 복잡한 調整計算을 하기 전에는 公表된 資料로부터 해당 企業의 真實한 財政狀態와 經營成績을 判斷하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반하여 1980年에 公表된 監查報告書에서는 限定事項數가 件當 平均 1.1個(最高 3個)로 대부분의 報告書(限定意見 110件 중 95%인 104件)가 1個의 限定事項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前述한 바 監查報告의 明瞭性과 관련하여 커다란 進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限定事項의 範圍에 대해서는 아직도 問題點이 尚存하고 있다. 이미 前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第4 報告基準의 非指摘事項의 適正性 推定의 規定은 모든 非適正事項⁽⁶⁶⁾의 指摘을 要求하고 있으나, 이는 監查人の 責任을 過重하게 한 憂慮가 있을 뿐만 아니라, 監查報告에 있으서의 重要性이나 明瞭性 基準에 背馳될 수가 있다.

事例 1. (限定事項)

假受金計定 중에 職員共濟會費 代身 支給額 ₩65,825이 相計計上되어 있는 바, 이는 假支給金計定에 對替 修正되어야 함.

假支給金 65,825 假受金 65,825

實際로는 이러한 問題를 綱羅하여 限定事項을 列舉하는 것이 거의 無意味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一次的으로 會社側에 해명 事項의 修正을 勸告・說得하되, 不然이면 監查調書에만 表示하고 報告書에는 記載하지 않든지, 또는 重要性에 따라 其他事項으로 一括하여 記載하는 것이 明瞭性의 原則에 충실한 處理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意見書내지 報告準則에 限定事項에 포함될 範圍, 省略 또는 其他事項으로 一括處理할 範圍의 基準을 提示하는 것이 要望된다.

때로는 監查報告에 不必要하거나 不適合한 事項이 限定事項으로서 指摘되는 수가 없지 않다.

事例 2. (限定事項)

……納入資本金의 年 5%에 不過한 5千萬원을 配當하기로 한 것은……定期株主總會에서 合法的으로 是正할 것을 要望함.

이러한 配當政策의 事項은 會社經營陣과 株主間의 問題로서 監查의 範圍를 넘어서는 것이며, 굳이 指摘한다 하더라도 報告書의 本文과는 별도로 補充的 說明事項에서 參考的으로

(66) 美國의 경우에 준하여, 金額은 물론 科目的 分類・區分・配列에 관한 非適正事項을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取扱하는 것이妥當한 것이다.

이러한 限定期項의 範圍問題를 監査報告의 實務的 慣習의 축적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第4報告基準의 구체적인 解釋 또는 指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限定期項의 項目을 불필요하게 細分하거나 반대로 混合記載함으로써, 또는 限定期項의 財務諸表에 대한 영향을 明記하지 않음으로써 明瞭性을 해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事例 3. (限定期項)

1. 會社는 退職從業員에 대하여 退職金을 支給하였을 때 그 支給額을 費用으로 處理하고 있으며,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을 設定하고 있지 않음.
2. 決算日 現在 全從業員이 退職하는 것으로 看做할 경우에 退職金으로 支給하여야 할 金額을 退職給與充當金으로 設定함을 要함.

위의 事例에서는 하나의 限定期項을 둘로 나누어 記載함으로써 誤解를 惹起할 우려가 있다. 또한 正當한 會計處理方法에 의하였을 경우 退職給與充當金이 얼마나 設定되어야 하며 當期純利益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다.

事例 4. (限定期項)

會社는 當會計年度中 資產再評價를 實施하였으나 固資定產의 再評價差額에 減價償却을 行하지 아니 하였으며, 換率差損計定에 計上된 換率差損 532,785,270원은 外貨借入金 債還時에 計上된 換率差損이나 그 중 438,752,052원은 過年度分 換率差損이므로 移越缺損金이 同額만큼 過小計上되고 當期純損失이 同額만큼 過大計上되고 있다.

위의 事例에서는 減價償却의 追加計上과 換率差損의 期間配分이라는 두가지의 異質的 事項을 하나의 項目으로 表現하여 誤解를 惹起할 우려가 있다. 또한 再評價差額에 대한 減價償却額의 크기에 대해서 言及이 없어서 財務諸表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상에서는 주로 項目的 區分, 財務諸表에 대한 영향의 金額的 表示의 불철저로 인한 明瞭性 問題를 검토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限定期項의 表現方式이나 用語가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明瞭性를 해치거나 監査報告書간의 比較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⁶⁷⁾ 이에 대비하여 限定期項의 標準的인 文例를 補充하여 提示하거나 구체적인 指針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根本的으로 限定期見과 不適正意見 또는 無意見과의 區別은 重要한 難點을 보이고 있다. 檢討된 110件의 限定期見報告書에서 限定期項 全體가 財務諸表에 미치는 影響은 불과

(67) 論議되지 않은 餘他의 問題를 提起하지 않도록 事例의 文章은 適切히 修正되었다.

當期純利益의 1% 未滿에서 50% 以上에 이르기 까지 넓은 分散을 보이고 있다. 限定事項의 重要性이 단순히 當期純利益과의 相對的인 比率에 의하여 判斷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당연히 不適正 또는 無意見을 表明하여야 할 것으로 認定되는 重要한 除外事項(적어도 總額上으로)을 포함하고 있는 財務諸表에 대해서도 會社側에의 影響을 考慮하여 限定意見을 表明하는 것은 監查報告書의 信賴性을 위해서 排擊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意見의 區分은 監查對象業體의 特性을 고려한 監查人の 慎重한 判斷에 의하여 伸縮的으로 決定될 문제이지만, 實際的으로 報告準則 또는 意見書에 보다 具體的인 指針을 마련하는 方案이 摸索될 必要가 있다. 이러한 摸索을 重要性 判斷의 具體的 接近方法 외에도 主要 比較金額의 選定, 限定意見許容 最高限度의 提示 등의 어려운 問題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지만, 意見區分이 一般大衆에 미치는 影響이 重要한 만큼 試圖될 價值가 充分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境遇이 든 意見區分의 任意性에서 생길 수 있는 그릇된 認識을 緩化하기 위하여 報告書의 適當한 場所에 非不適正事項의 影響을 總額의으로 表示하고, 나아가 그 重要性을 基準金額에 대한 相對的 比率로서 併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不適正意見報告書

前述한 바와 같이 1980年에 公表된 監查報告書 중에는 不適正意見이 1件도 없었으나, 比較를 위하여 이에 관한 事例를 별도로 補充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財務諸表에 대한 不適正意見의 表明은 會社에 미치는 影響이 重大하므로, 누가 보아도 納得할 수 있도록 그 理由를 報告書의 中間文段·註釋 등으로 明瞭하게 記載할 필요가 있다. 不適正의 事由에는 事項別로 會社側 會計處理의 要旨와 그것이 不適正한 理由 및 그로 인하여 當期純損益, 移越利益剩餘金, 其他 財務構造에 미치는 影響을 밝히고, 그것이 監查人の 判斷에 重要한 것으로 認定된다는趣旨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事例 5의 境遇에는 部分的(1, 2項)으로 正當한 會計處理가 間接的으로 暗示되어 結果的으로 綜合的인 不適正 判斷의 根據가 되는 金額의 由來를 알기 곤란하며, 또한 結論部에 있어서 偏倚의 方向이 밝혀지지 않아 明瞭性의 觀點에서 未洽한 느낌을 주고 있다.

事例 5. (不適正事項)

1. 借款前 代金에 대한 發生利子로 未支給된 241,746,445원이 損費處理되고 있지 않으며,
2. 在工品 중에는 稅務否認 有在庫不足額 144,883,945원이 包含되어 있고,
3. 有形固定資產에 대한 減價償却費 837,667,644원이 過小計上되었음. 이로 因하여 當期純損金 363,861,970원이, 當期末未處理缺損金은 1,282,691,727원이 각각 計上되었음.

不適正意見과 無意見의 區分은 比較的 明白한 것이지만, 그 混用인듯 싶은 것도 눈에 띠이고 있다.

事例 6. (不適正事項)

1. 土地 및 構築物의 被害復舊工事費 397,245,786원에 대하여는 備置한 諸帳簿 및 支出證憑을 調查하였으나, 그 支出證憑 및 內部決議가 현저히 未備되어 있었으므로, 그 支出事實의 正當性 및 會計處理의 妥當性에 대해서는 檢討할 수가 없었음.
2. 重要한 去來事項의 追跡을 위하여 銀行當座去來 카드의 寫本을 要求하였으나 이를 提出받지 못함으로서, 會社에 비치된 帳簿 및 傳票와 手票副本에 의해서만 그 支出의 正當性을 檢討할 수 밖에 없었음.

監查人에 의하여 重要한 것으로 判斷된 監查節次를 省略하였을 경우에 不適正意見을 表明하기 위해서는, ① 이에 갈음하는 監查節次의 適用에 의하여 만족스러운 結果를 얻었다고 認定되며, 또한 ② 그 결과 會社의 會計處理가一般的으로 認定되는 會計原則에 準據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이 繼續的으로 適用되지 않았음이 判明되었으며, ③ 그로 因하여 財務諸表가 重要한 影響을 받고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限한다. 그러나 事例 6의 境遇는 그趣旨로 보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監查節次의 制約으로 인하여 會計處理 및 財務諸表表示의 適正性을 確證할 수 없는 金額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監查人에 의하여 重要한 것으로 判斷된다는趣旨와 함께 無意見을 表明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4. 無意見報告書

無意見報告書의 境遇에도 會社側 등에 미치는 影響의 重大性에 비추어, 그 具體的인 事由를 報告書 本文 및 必要에 따라 註釋으로서 明瞭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예컨대, 다음 事例의 경우에는 具體的인 理由가 明示되지 않음으로써 意見表明에 必要・充分한 監查節次를 實施하지 못하게 된 責任의 所在까지 不分明해 질 우려가 있다.

事例 7. (無意見事由)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監查基準에 의하여 監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一般的으로 實施되는 監查節次와 監查人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其他의 監查節次를 充分히 適用하지 못했으므로……

한편, 重要한 不確實性을 指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金額의으로 얼마나 重要한 것인지를 밝혀서 監查報告利用者の 理解를 도와야 할 것이다.

事例 8. (無意見事由)

法的 訴訟擊留事件의 結果 및 海外工事에 대한 諸記錄의入手가 不可能하여……

이는 앞서의 事例 7에 비하여 보다 具體的이긴 하지만 訴訟擊留事件 및 海外工事의 規模 내지 推算額을 併記하여 그 重要性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意見種類에 따른 監查報告書의 事例를 簡略히 檢討하였다. 本 論議는 監查人の 資質向上을 위한 諸計劃의 推進은 물론 監查報告規程의 指導的 機能을 整備強化함으로써 事例分析에서 나타난 몇가지 主要한 問題點이 改善될 수 있음을 示唆하였다. 예컨대, 報告準則 내지 意見書의 限定·不適正·無意見에 해당하는 事項의 記載에 대한 指針 내지는 具體的 事例의 補充이 바람직하다는 示唆와 함께, 意見區分에 대한 具體的 指針設定의 摸索 및 非適正事項의 總額表示의 要件化의 必要性 등이 言及되었다. 이제 監查報告實務上의 問題點을 綜合的으로 檢討하고 制度의 改善方向을 摸索함으로써 本章의 結論을 맺고자 한다.

第2節 監查報告實務上의 一般的인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監查報告에서는 實務上의 與件과 관련하여 각종의 問題點이 出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報告의 主體인 公認會計士側에서는 물론 報告의 利用者의 立場에서도 여리가지 問題點이 指摘되어 왔다. 이들을 綜合하여 보면 대체로 監查人の 獨立性에 관련된 問題, 監查 實施의 範圍와 그 充分性에 관한 問題, 意見表明의 明顯性에 관한 問題, 監查報告書의 繼續性 내지 比較可能性에 관한 問題 등으로 分類될 수 있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주요 문제에 대하여 問題의 性格 및 그 改善方向을 간단히 檢討하기로 한다.

1. 監查人の 獨立性

職業監查人の 倫理的 態度로서의 獨立性은 監查節次 全般에 있어 要求되는 것이지만, 特히 監查報告中 意見表明에 있어서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監查制度는 「不特定多數人の 利害關係를 調整하는 ‘公益的 立場’에서 監查를 實施·報告한다」는 獨立的 監查人으로서의 公認會計士의 精神的 態度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指摘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公認會計士 자신이 監查業務遂行上의 難點으로서 意見表明에 대한 壓力を 지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일단 鼓舞的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監查對象業體에 不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意見表明에 대하여 直接的인 壓力이 없다 하더라도, 監查人の 위치와 관련하여 어떤 意味에서 監查人에 의하여 自發的으로 受容되는 間接的인 壓力이 存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監查人の 獨立性 問題는 좀더 慎重한 考慮와 制度의 裝置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즉, 公認會計士의 過當競爭으로 交渉力이 弱化됨에 따라 다른 特別한 利害關係가 없더라도 監查契約 自體로서 利害關係가 介在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直接的이든 間接의든 企業側의 要求 내지는 壓力에 超然하기 어려운 與件이造成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與件은 該當 會計監查 報告書의 意見表明을 歪曲시킬 수 있고, 나아가 會計監查制度의 存在價值를 變質시킬 危險까지도 内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危險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公認會計士의 資質向上이 무엇보다 要請되며, 아울러 監查人の

責任強化도 중요한 制度的 方便으로 利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監査人の 獨立性 問題은前述한 바와 같이 단순히 '高邁한 人格'에 의하여 保障되기 어려운 經濟의 「메카니즘」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監査契約의 締結에 있어서의 公認會計士間의 過當競爭을 防止하고 公認會計士의 經濟的 身分을 保障하는 등의 制度의 與件이 附隨되어야 할 것이다.

2. 監査實施의 充分性

公認會計士들이 主要한 問題點으로 指摘한 監査實施의 充分性 問題는 ① 意見表明에 必要充分한 證據의 範圍와 證據力, ② 監査實施에 許用된 經費와 時間, ③ 監査人の 知識과 能力 등의 要因을 考慮할 필요가 있다. 먼저 監査實施에서入手된 證據가 意見表明에 充分히 有效한가는 監査人이 監査經驗・監査慣習에 의하여 優重히 判斷할 問題이지만, 内部統制組織・重要性・危險性의 判斷은勿論 經濟性과의 綜合의인 判斷에 있어서 상당한 主觀性이 介入될 餘地가 많다. 따라서 充分한 監査經驗의 蓄積이 없는 實情에 비추어 報告準則 단일 意見書에合理的 證據의 性格을 보다 具體的으로 提示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監査實施에 訸用된 經費와 時間의 不足은 公認會計士에 의하여 未洽한 監査implementation의 主原因으로 指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大規模의 企業을 불과 4週內에 監査하도록 되어 있는 現行制度는 時急한 改定을 必要로 하고 있다. 더우기 經費上 監査人員을 充分히 投入하지 못하고 있으며, 監査制度의 認識不足에 의한 被監査會社 等의 協助不足은 이를 더욱 惡化시키고 있으므로 適切한 是正이 要求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監査人の 知識과 能力 問題는一般的인 監査의 知識・能力은 물론 監査對象業體의 業務의 特性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前者에 대해서는 監査準則・意見書의 指導的 機能의 整備擴充과 더불어 學界・實務界의 꾸준한 研究・研修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後者에 대해서는 繼續監査制度의 確立 내지는 職業監査人の 業種別 專門化에 의하여 크게 改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繼續監査制度의 確立은 監査全般에 걸쳐 經費・時間의 節約을 위하여, 換言하여 同一한 經費・時間의 制約下에 보다 充實한 監査를 遂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要望되고 있으며, 後述하는 監査報告書의 期間比較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方法이 될 것이다.

3. 意見表明의 明瞭性

監査報告의 核心을 이루는 意見表明의 明瞭性과 관련하여 現實의으로 ① 意見區分의 實質性, ② 限定・不適正・無意見에 該當하는 事項記載의 明瞭性, ③ 監査對象 財務諸表와 修正事項의 統合表示 與否 등의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最近 限定意見書의 比重이 急增하였고, 이에 따라 "...등의 事項을 除外하고는 ...適正..."으로 表示되는 限定意見

表明의 基本構造가 明瞭性의 觀點에서 상당한 難點을 보인다는 批判에 주로 起因한 것이다. 이들 중 ①, ②의 事項에 대해서는 이미 前節에서 事例를 통하여 具體的으로 檢討되었으므로 여기서는 再論을 省略하기로 한다. 다만, 實務上 限定意見은 不可避한 不確實性의 境遇 外에는 可及的 節制하고, 修正事項은 直接 會社側에 修正을 勸誘·說得하는 것이 여려모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附記해 둔다.

財務諸表와 修正事項의 綜合表示 問題는 現行과 같이 먼저 會社作成의 財務諸表를 提示하고 다음에 修正事項을 列舉하는 方式으로는 一般大衆에게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績에 대한 明瞭한 情報를 提供하기 어렵다는 論議에 根據한다. 따라서 가장 完全한 方法으로서 監查人이 直接 會社作成財務諸表에 修正事項을 加減調整한 修正財務諸表를 作成하여 報告書에 別添할 것을 主張하게 된다. 반면에 修正財務諸表의 表示는 監查人の 越權이고, 오히려 會社作成財務諸表와의 混用을 招來하게 된다는 反論이 있다. 원래의 「監查報告準則」은 後者의 主張에 立脚하여 監查報告書에 添附되는 財務諸表를 “經營者가 作成하고 經營者의 것”인 監查對象財務諸表에 限定하고, 다만 會計原則 또는 繼續性의 違背에 의하여 限定意見·不適正意見을 表明하는 境遇에 證券去來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修正財務諸表를 財務部長官에 提出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⁶⁸⁾ 그러나 改正된 監查報告準則은 이와 같은 修正財務諸表에 관한 項目을 全部 削除하여, 結果적으로 監查人の 判斷에 따라 修正財務諸表를 添附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친대 오늘날 多數의 利害關係者들에게 提供되는 財務諸表가 經營者の 것임을 지나치게 強調하는 것은 時宜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監查制度의 實效性을 姦縮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監查人の 伸縮的인 判斷에 맡기는 것이 溫當할 것이다.⁽⁶⁹⁾

修正財務諸表 외에도 會社作成財務諸表와 要修正事項을 統合表示하는 折衷의인 方法이 여러 水準에서 생작될 수 있다. 예컨대 修正財務諸表를 會社作成財務諸表와의 比較形式으로 表示하나 縮約式 또는 縮約比較式으로 表示할 수도 있으며, 또는 要修正事項의 影響만을 縮約財務諸表의 形式으로 表示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文言上의 補充에 의하여 비슷한 效果를 期待할 수도 있을 것이다. 現時點에서는 어떠한 方法이 가장 合理的이라는 것이一般的으로, 더우기 硬直的으로 認定될 수 없는 이상, 要修正事項의 數·重要性·性格 등을 考慮한 監查人の 伸縮的인 判斷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다만 限定事項의 數가相當數를 超過하면 現行과 같이 個別的으로 要修正限定事項의 純利益·移越利益剩餘金에 미치는 影響만을 表示하는 것은 明瞭性에 비추어 適合한 方法으로 補充되어야 하며, 적어도 要修正

(68) 會計監查研究委員會(1972), (改定前)「監查報告準則」, 五의 1의 (1), (2) 및 2.

(69) 特히 比較의 重要하지 않은 限定事項이 多數일 경우에 修正財務諸表의 表示가 要望된다.

事項이 總額의으로 當期純利益에 미치는 影響은 따로 記載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4. 意見表明의 比較可能性

意見表明의 一貫性 問題는 具體的으로 同一한 基準에서 限定・不適正・無意見에 해당하는 事項이 指摘되고 또한 同一한 基準에서 無限定・限定・不適正・無意見이 區分될 것을 要求하는 것으로, 財務諸表의 比較可能性에 對應한다. 意見表明 내지 監查報告의 一貫性은 空間的 時間의으로 必要하다. 먼저 監查報告의 空間의 一貫性은 財務諸表의 企業間 比較可能性에 對應하며, 적어도 同一 또는 類似業種에 대해서 指摘事項・意見區分이 同一한 基準에 立脚해 있을 것을 要求한다. 이것은 前述한 監查報告準則 또는 意見書의 擴充 및 監查業務의 專門化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充足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監查報告의 時間의 一貫性은 財務諸表의 期間比較에 對應하며 特히 繼續監查制度의 確立에 의하여 所期의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第4章 結 言

監查報告는 監查節次 全般을 歸結짓는 段階로서 獨立의 監查人이 公益的 立場에서 監查制度의 主要 受惠者인 利害關係者에게 監查報告書에 의하여 監查情報 to 傳達하는 過程이다. 우리나라 is 比較的 最近에 이르러 주로 經濟成長과 企業公開政策의 背景 위에 監查對象業體와 監查報告의 利用者가 다같이 크게 增加하였다. 이에 따라 監查制度의 整備가 急激히 進行되었으나, 土着의인 監查經驗 내지는 監查慣習이 成熟하지 못한 問題로 여러가지 問題點을 露呈하고 있다.

本稿는 이와 같이 監查經驗 내지 監查慣習의 缺如가 慧起하는 諸問題가 適切한 監查制度의 整備에 의하여相當한 程度로 改善될 수 있다는 立場에서 出發하였다. 따라서 重要한 關心은 우리나라 監查報告制度의 核心을 이루는 諸規程, 특히 監查報告의 規範이 될 뿐만 아니라 指導的・啓蒙的 機能을 擔當하는 것으로 期待되는 「會計監查基準」, 「監查報告準則」 및 「會計監查研究委員會 意見書」에 集中되었다. 監查報告 諸規程의 檢討는 주로 比較分析에 立腳한 規程 自體의 直接的인 檢討와, 事例分析을 中心으로 實務와 有機的인 關聯下의 間接的인 檢討라는 2가지 方向에서 接近되었다. 筆者는 前者の 接近에서 先進外國의 監查經驗 등을 “先驗的으로”吸收하는데 重點을 두었으며, 여기서 看過된 問題들이 後者の 接近에서 우리나라의 監查經驗에 입각한 “經驗的인” 檢討에 의하여 補充되도록 留意하였다. 이러한 兩面의in 接近方法은 筆者の 見解에 의하면, 比較的 有益한 研究方法으로 생각되

었다.

먼저, 第 2 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監查報告規程이 監查制度의 歷史的・時代的 背景과 더불어 美國・日本의 그것과 比較分析되었다. 監查制度發達의 先導的 役割을 擔當하여 온 美國의 「一般的인 認定된 監查基準」은 健全한 監查經驗의 蓄積에 의하여 漸進的・歸納的으로 形成되었으며, 이를 頂點으로 하여 풍부한 監查經驗과 研究의 所產으로 原則的인 事項은 물론 主要 問題全般에 걸쳐서 一連의 「監查節次說明書」내지 「監查基準說明書」가 具體的으로 補充하고 있다. 日本의 「會計監查基準」은 美國의 監查基準에 源源을 두되 얼마간 보다 網羅的・體系的・抽象的인 特徵을 가지며, 이에 대한 簡潔한 說明의 敷衍으로서 「監查報告準則」이 있다. 이에 대하여 比較的 最近에 急激히 整備된 우리나라의 監查報告規程, 특히 「會計監查基準」 및 「監查報告準則」은 각각 美國・日本의 該當規程을 折衷・統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監查制度에 重要한 影響을 미쳐 온 美國・日本의 關係規程과의 比較分析을 중심으로 多角的인 觀點에서 現行 「會計監查基準」, 「監查報告準則」 및 「會計監查研究委員會意見書」 등의 問題點이 分析되었는 바, 대체로 다음과 같은 改善方向이 提示될 수 있었다.

- (i) 改定된 「會計監查基準」 중 監查報告基準은 美・日의 關係規定을 比較的 成功的으로 折衷・統合하고 있으나, 약간의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 예컨대, 第 1 報告基準 중의 “會計의 處理”라는 文句는 刪除되는 것이 좋을 것이며, 第 3 報告基準 중의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은 事項일지라도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에 重要한 影響이 미칠 可能性이 있는 境遇”는 可能한 混用을 防기 위하여, “監查對象年度의 財務諸表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事項일지라도, 次年度 以後의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에 非正常的으로 重要한 影響이 미칠 可能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라는趣旨로 明白히 表示하며, 아울러 第 3, 4 報告基準의 順序를 바꾸는 것이妥當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監查基準이 監查經驗에서 形成된 것이 아닌 만큼 그 解析運用에 특히 留意하되, 充分한 研究・檢討를 거쳐서 必要한 事項은 監查報告準則의 總則 其他 該當部分에 補充하는 것이 要望된다.
- (ii) 監查報告準則과 會計監查研究委員會의 意見書는 時宜에 맞추어 신속히 改定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兩者가 有機的 關聯을 가지고 監查經驗을 吸收하여 그 指導的・啓蒙的 機能을 擴充할 것이 要望된다. 意見書는 問題의 提起・時宜의 變化에 一次的으로 신속히 對應하여 伸縮的이고도 論議可能한 監查經驗의 蒸溜機構로 活用하는 것이 要望된다. 또한 報告準則의 未備點 등에 대해서도 體系的인 研究計劃을 마련하여 繼續 意見書의 形式으로 補充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 意見書와 관련하여 監查報告準則은 적당한 기간마다 意見書에 의하여 定着化된 監查經驗과 理論을 吸收하여 綜合的인 監查報告指針으로서의 機能을 擴張시켜 나갈 것이 要望된다.

이어 第 3 章에서 現行의 監查報告實務上의 問題點이 個別的인 事例分析과 綜合的 觀察에 立脚하여 分析・檢討되었다. 最近의 報告書의 大部分은 限定意見을 表明하고 있는 바, 具體적으로는 不適正・無意見과의 區別에서부터 細部의으로 限定事項의 記載方式에 있어서 問題되는 事例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公認會計士의 專門的인 知識과 能力이 平準화

되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緣由할 것이다, 상당한 部分이 制度上의 缺陷과 관련되어 있으며, 적어도 制度的 整備에 의하여 상당히 改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一般的으로 監查報告 實務에서 監查人의 獨立性, 監查實施의 充分性, 意見表明의 明瞭性, 監查報告의 一貫性 등이 問題되고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綜合的인 制度의 改善方向을 提示할 수 있었다.

(iii) 基本的으로 監查人의 獨立性을 確立하기 위하여 資質向上이나 責任強化는 물론 監查人の 經濟的 地位의 保障을 위한 制度의 與件이 附隨되어야 한다. 意見表明의前提가 되는 監查實施의 充分性을 위하여 充分한 經費와 時間의 確保와 必要하며, 繼續監查制度 내지 監查業務의 專門化가 바람직하다. 監查報告 특히 意見表明의 明瞭性을 위하여 意見區分에 대한 具體의 基準의 마련이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限定・不適正 및 無意見에 해당하는 事項의 記載要件 내지 文例를 意見書 내지 報告準則에 提示하는 것이 要望되고 있으며, 적어도 이들 指摘事項이 總額의 으로 財務構造에 미치는 影響을 明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監查報告의 一貫性을 위하여 報告規程의 具體化가 要請되며, 同一企業의 繼續監查制度의 確立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經濟成長의 定着化와 구준히 推進될 企業公開政策 및 企業公示制度의 確立에 따라 監查報告의 作用範圍는 더욱 急速히 增大할 趨勢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監查制度의 社會的・公益的 役割이 量的・質的으로 더욱 重要하게 될 것이다. 職業監查人の 公認會計士의 社會的 責任은 더욱 무거워 질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信賴性 있는 監查制度의 確立은 時急한 時代의 課題이며, 이는 監查經驗의 蕩積에 의한 緩漫한 開發의 —試行錯誤를 포함하는—過程으로서가 아니라, 制度的 機構에 의하여 強力히 先導될 것이 期待되고 있다. 早速한 監查制度의 早速한 整備를 위하여 두가지 方向에서의 努力이 併行되어야 한다. 즉,一面 先進外國의 健全한 監查經驗을 廣範히 吸收하도록 하고, 他面 우리나라 監查與件을 考慮하여 이들을 消化하고 나아가 適合한 監查經驗을 蕡積・定着化시키는 데도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職業監查人으로서의 公認會計士는 물론 實務界・學界가 두루 參與하는 不斷한 研究・努力이 要望되고 있다. 오늘날 이후의 監查制度의 重要性을 考慮하면 이러한 努力은 先進國이 經驗한 바 있는 可能한 試行錯誤를 줄이기 위하여 支拂하는 對價로서는 결코 竅비싼 것이 아닐 것이다.